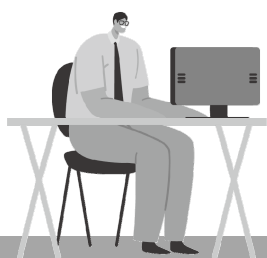


해외 보험동향

| 총괄 오병국 (연구위원)

| 해외 보험동향

일본	이상우 (수석연구원)
싱가포르, 대만	이소양 (연구원)
중국	김연희 (연구원)
싱가포르, 호주	장윤미 (연구원)
북미	김성균 (연구원)
EU, 독일	이승주 (연구원)
영국	김윤진 (연구원)



12_호

[2023-1]

목 차

[특집] 신흥국 보험시장 현황: 싱가포르 편	1
I.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 일본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최근 동향	21
2. 일본 보험회사의 은행대리업 진출 현황	26
3. 중국 개인연금 제도의 시행 현황	30
4. 대만 신용생명보험 시장 동향	33
5. 싱가포르 통합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SGFinDex) 출시	37
6.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성별격차 문제와 해결에 관한 정책 추진 동향	40
II. 북미	
1. 미국 연방 보험청의 데이터 콜 제안	43
2. 미국 보험회사의 ESG 경영 현황: 임금 형평성을 중심으로	47
III. 유럽	
1. EU 차량데이터 접근권한에 대한 법(EU Data Act) 동향	51
2.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의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 출시 및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지침 발표	54
3. 영국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도입	57
4. 영국 보험회사들의 홍수위험 적응 수단(PFR 장치) 설치 지원	61

요 약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기준 세계 24위 수준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입지적 이점, 발달한 경제 인프라 등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기회가 많은 시장임. 열린 시장정책으로 싱가포르 보험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관찰되고 있음. 주요 특징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국내사와 외국사가 함께 주도하는 가운데 양로·종신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산업은 외국사와 자동차·재산·건강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1. 국가 개요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의 끝에 있는 도시국가이며 안정적인 정치, 열린 시장정책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금융, 무역,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
 -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반도연맹(Malaysia Federation)에서 탈퇴하고 싱가포르공화국으로 출범하였으며, 1965년 이후 연평균 6% 이상으로 성장하고, 1인당 GDP도 약 590달러(1966년)에서 6만 4천 달러(2021년)로 약 110배 성장하는 등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¹⁾
- 안정적인 정치환경,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정책, 중국·인도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국제공항, 항구 등 발달한 경제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외국 자본의 싱가포르 진출이 매우 활발함
 -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태지역에서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 자본에 대한 기회가 많으며, 보험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진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1) 통계청,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표 1〉 싱가포르 국가 주요 지표(2021년)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719km ² (서울의 약 1.2배)	1인당 GDP	64,010 USD(세계 8위)
인구	545만 명(중국계 74%, 말레이계 13%, 인도계 9% 등)	생산인구 비중	약 73%(2022년)
GDP	3,970억 USD	기대 수명	83.5세(남성 81.9세, 여성 86.5세)
GDP 성장률	7.6%	고령화 비중	약 15%(2022년)

자료: 외교부, 「싱가포르공화국 기본정보」; 통계청,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Kotra(2023),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2. 경제정책 변천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국토 면적이 작고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1965년 독립 이후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음
 -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1965~1979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채택함
 - 자본·기술집약적 산업화 정책(1979~1985년):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함
 - 산업구조고도화 정책(1986~1998년):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며, 동남아시아 시장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여 싱가포르의 역할을 제고함
 - 지식기반경제 정책(1999~2008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경제 성장의 두 축으로 설정하여 지식주도산업(Knowledge-driven industries)의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하고자 함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정책(2009~2015년):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싱가포르의 기존 경쟁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7대 성장전략²⁾을 제시함
 - 2014년과 2015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와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각각 발표함
 - 안정적 경제 성장전략(2017~): 세계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경제위원회(CFE)를 설립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2~3%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7대 장기 성장전략³⁾을 밝힘

2)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7대 성장전략은 ① 기술 및 혁신을 통한 성장, ② 글로벌 아시아 허브 도시화, ③ 다양하고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 육성, ④ 혁신 추구 및 R&D 상용화 촉진, ⑤ 스마트에너지 경제 구축, ⑥ 토지 생산성 증대, ⑦ 글로벌 도시이자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임

3)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7대 장기 성장전략은 ① 국제 연계성 심화 및 다각화, ② 심도 있는 기술 습득 및 활용, ③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 ④ 우수한 디지털 역량 구축, ⑤ 활기차고 연결된 기회의 도시 개발, ⑥ 산업혁신지도 개발 및 구현, ⑦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 관계 강화임

〈표 2〉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정책 변천

연도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1965	•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출범	1999	• ‘인더스트리 21(Industry 21)’을 수립하여 자국 경제를 9개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의 지식기반경제로 발전
1967	• 경제확대장려책을 발표하여 제조업의 법인소득세율을 40%에서 4%로 조정	2009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전략위원회(ESC)를 설립하여 7대 성장전략을 발표
1972	• 국가임금위원회를 설립하여 임금억제 정책을 추진	2014	• 국가정보화 전략의 최신판이자 사회문제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성장정책인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
1979	• ‘2차 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하여 자본·기술집약적 산업화를 추진	2015	•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 출범에 따라 스마트 금융센터 출범을 선언(2017년 국제 핀테크 허브 육성 계획을 추가 발표)
1986	• ‘싱가포르 경제: 새로운 방향 보고서’를 통해 산업구조고도화를 제시	2016	• ESC가 수립한 경제정책을 검토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미래경제위원회(CFE)를 출범
1991	• ‘전략적 경제계획’을 발표하여 기술집약적 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2017	• 10년간(2017~2027년) 2~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7대 장기 성장전략 제시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싱가포르의 개방경제체계의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싱가포르의 성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기초로 작성함

3. 보험산업 발전정책

○ 싱가포르 정부는 독립 이후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함

- 독립 이전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20세기 초에 푸르덴셜 등 외국 보험회사들의 설립으로 시작되었으며, 외국 보험회사들은 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제공함
- 독립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싱가포르 정부는 보험시장을 규제하는 보험법을 제정하고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MAS)을 설립하였으며 재보험시장 육성을 위해 외국 자본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함
 - 1966년에 보험법을 통해 보험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71년에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업에 대한 규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으로 통화감독청을 설립함
 - 1999년에 싱가포르를 아시아지역의 재보험 중심지로 육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00년에 외국인의 자본 소유 규제를 폐지함⁴⁾
-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까지 MAS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위험기반 재무건전성제도인 RBC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단의 하나로써 ORSA제도를 도입함
 - 2005년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 RBC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 보험회사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ORSA제도를 도입함⁵⁾

4) MAS, “Singapore to Play a Bigger Role as a Reinsurance Hub”

- 2020년 이후 MAS는 금융서비스 혁신 확대를 위해 핀테크 샌드박스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등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해 보험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요구함
- 2021년 요구 조건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 샌드박스 규제 완화 내용⁶⁾을 발표하였으며, 보험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⁷⁾을 제정함

〈표 3〉 싱가포르의 주요 보험산업 발전정책

연도	주요 발전정책
1966	• 보험법(Insurance Act) 제정을 통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등 보험업 관련 사업자의 인가, 승인 및 등록 내용 명시
1970	• 싱가포르통화감독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제정으로 중앙은행이자 금융규제기관인 MAS 설립
1999	• 보험중개업법(Insurance Intermediaries Act) 제정을 통해 보험중개인의 등록, 보험중개인과 보험회사의 계약 등 규정
2000	• 보험시장 대외개방을 위해 외국 보험회사의 싱가포르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외국인의 지분 소유 제한(49%) 폐지
2001	• 금융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을 제정하여 등록 및 면제 금융자문업자의 사업 수행 요건, 업무 유형 명시
2004	• 보험(중개인)조례(Insurance (Intermediaries) Regulations)를 제정하여 등록 및 면제 보험중개인의 사업 수행 요건, 업무 유형 명시
2004	• 위험기반 재무건전성제도(RBC) 도입 결정
2005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결정하며, 예금보험법(Deposit Insurance Act)을 제정하여 싱가포르 예금보험공사(SDIC) 설립
2011	• 보험회사 지급불능 시의 보험계약자 보상제도 강화를 위해 보험계약자보호제도(Policy Owners' Protection Scheme) 시행
2016	• 보험업법 수정안 및 금융자문업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금융자문업 규제 강화 • 인슈어테크를 포함한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2020	• 보험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자료: AXCO,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MAS(2004), "MAS Implements New Risk-Based Capital Framework for Insurers in Singapore"; MAS(2017), "Guidance on Insurers'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s" 등을 기초로 작성함

5) MAS(2004), "MAS Implements New Risk-Based Capital Framework for Insurers in Singapore"; MAS(2017), "Guidance on Insurers'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s"

6) Clifford Chance(2021), "MAS enhances FinTech Regulatory Sandbox and announces technology and data sharing platform"

7) MAS(2020), "Guidelines on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for Insurers"

4. 보험업 감독과 규제

- 통화감독청(MAS)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자 금융규제기관이며 통화감독청법에 따라 보험을 비롯하여 은행, 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시장 행동을 감독함⁸⁾
 - MAS의 보험 부문 감독 대상은 보험회사(재보험회사 포함), 캡티브보험회사, 금융자문업자,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이 있음
 - 생명보험(재보험 제외)을 모집하는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은 금융자문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함
 - 손해보험을 모집하는 보험대리인은 MAS에서 보험대리인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손해보험협회(GIA)에서 등록해야 함⁹⁾
 - MAS 외에도 생명보험협회(LIA), 손해보험협회(GIA)는 내부 행동 규제 및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사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음
- 1966년에 제정된 보험법(Insurance Act)은 보험사업자(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에 적용된 감독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외국인의 싱가포르 보험업 경영을 규제하고 있음
 - MAS는 보험법 외에도 규정(Regulation), 통지(Notice), 지시(Directive), 지침(Guideline), 수칙(Code), 성명(Statement) 등을 통해 보험사업자를 규율하고 있음¹⁰⁾
 - 또한, 금융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은 생명보험(재보험 제외)을 모집하는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음
- 싱가포르 보험법은 보험계약의 규율을 목적으로 총 4장, 155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을 생명보험과 비(非)생명보험으로 양분하여 보험회사(외국 보험회사 포함)와 보험중개인(보험대리인 포함)에 대한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1장(보험용어와 보험계약 유형), 제2장(보험회사(외국 보험회사 포함)와 사업 요건, 보험중개인(보험대리인 포함)과 사업 요건), 제3장(회계, 감사와 조사, 계약이전, 청산 등), 제4장(보험 감독 및 기타 사항)으로 구성됨
 - 싱가포르 보험업은 보험법 외에도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특정 유형의 보험을 규제하는 법률, 영국의 보험계약법(1867), 제3자보호법(1930) 등 영국 법률도 수용되고 있음¹¹⁾
 - 한편, MAS는 보험(계리사)규정, 보험(지배구조)규정, 보험(중개와 대리)규정, 보험(보수)규정, 보험(자본, 부채와 자산의 평가)규정,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통지,¹²⁾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제도에 관

8) MAS(1999),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0"

9)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The General Insurance Agents' Registration Regulations"

10) MAS, "Supervisory Approach and Regulatory Instruments"

11) The Legal 500(2020), "Overview of insurance law in Singapore"

12) MAS(2022), "Notice 125 Investments of Insurers"

한 통지¹³⁾ 등 보험법 하위법령을 통해 보험업 관련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⁴⁾

○ 현재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보험법 및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보험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가 면허를 신청할 경우 MAS가 보험회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고 면허 신청 후 약 6~8주 이내에 면허를 부여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보험회사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공식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MAS에 연락하여 보험회사 설립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 보험회사 면허 신청의 처리 시간은 실제 신청 상황과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험회사 면허 유형에는 공인(Licensed) 보험회사, 외국 보험인수단(Syndicate), 인가(Authorised) 재보험회사, 승인(Approved) MAT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의 대표처가 있음¹⁵⁾

- 공인 보험회사는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를 설립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하며, 보험회사 유형으로는 원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캡티브보험회사가 있음¹⁶⁾
 - 캡티브보험회사는 설립자 관련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의 위험과 관련된 보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 외국 보험인수단은 싱가포르에 보험업을 영위하는 특수 외국 법인 형태이며, 외국 보험인수단의 회원사들은 물리적 실체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음
 - 현재 Lloyd's는 싱가포르에 외국 보험인수단(Lloyd's Asia service company)을 설립하였으며, Lloyd's Asia service company의 회원사들은 물리적 실체 없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인가 재보험회사는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가 없고 외국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재보험회사임¹⁷⁾
 - 인가 재보험회사는 싱가포르에 원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 승인 MAT보험회사는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가 없고 외국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MAT(해상, 항공, 운송)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 징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¹⁸⁾

13) MAS(2022), "Notice 133 Valuation and Capital Framework for Insurers"

14) Singapore Statutes Online, "Subsidiary Legislation"

15) MAS, "Types of Insurance Entities"

16) MAS, "Direct Insurer: Apply for Licence"

17) MAS, "Authorised Reinsurer: Apply for Authorisation"

18) MAS, "Approved MAT Insurer: Apply for Approval"

- 외국 보험회사의 대표처는 싱가포르에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MAS가 허가한 연락, 시장조사 등 비(非)경영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음¹⁹⁾

○ 싱가포르에서는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의 겸영이 허용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는 종합보험회사(재보험회사 포함)가 있음²⁰⁾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업 영업 범위는 생명보험 및 장기(5년 이상)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을 포함하며,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업 영업 범위는 생명보험 및 장기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업임
- 한편, 싱가포르에는 금융보증보험, 해상보험, 무역보험, 정치위험보험 등 특정 손해보험 종목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채널만을 활용하는 전문보험회사가 존재함

나. 보험회사의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싱가포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보험회사 유형과 보험종목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을 영업하는 공인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1,000만 싱가포르달러(약 735만 미국달러)이며, 공인 재보험회사(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포함)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2,500만 싱가포르달러(약 1,836만 미국달러)임
 - 단기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또는 변액보험 등 특정 보험종목만을 판매하는 공인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500만 싱가포르달러(약 367만 미국달러)로 일반 공인 보험회사보다 낮은 수준임
-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가 없고 외국에서 재보험을 제공하는 인가 재보험회사는 보험종목별 200만 싱가포르달러(약 147만 미국달러)의 최소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싱가포르 보험산업은 RBC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MAS의 권고치인 120%,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²¹⁾

- 싱가포르는 2004년에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위험기반 지급여력제도(RBC)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는 RBC2 제도를 도입하였음²²⁾
-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120% 또는 자기자본비율 100% 이하를 나타낼 경우 MAS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조사 및 현장관리와 같은 감독 조치를 내릴 수 있음

19) MAS, "Set up Insurance Representative Office"

20) MAS, "Types of Insurance Entities"

21) Deloitte(2016), "New Risk Based Capital Framework for Insurers in Singapo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2) Moody's Analytics(2020), "MAS Amends Risk-Based Capital Framework Requirements for Insurers"

다. 보험모집

○ 싱가포르 보험법은 보험모집인을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및 금융자문업자로 규정하고 있음²³⁾

- 보험회사를 위하여 생명보험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는 MAS에서 금융자문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해야 함
 - 금융자문업자 취득 요건은 보험법이 아닌 금융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에 규정되고 있음²⁴⁾
- 보험회사를 위하여 비(非)생명보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자(보험대리인)는 MAS에서 보험대리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대리하는 주요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에서 등록해야 함²⁵⁾
 - 싱가포르의 보험대리인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비(非)생명보험, 장기(5년 이상)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중개인)는 MAS에서 보험중개인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해야 함²⁶⁾
 -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법인만 보험중개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금융자문업자는 보험중개인 면허 취득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중개인 자격으로 보험소비자를 위해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할 수 있음²⁷⁾
 - 금융자문업자는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 자문 등 다양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은행은 보험법, 은행법, 금융자문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체결 대리 또는 중개 자격을 취득하여 방카슈랑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²⁸⁾

- 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배타적 판매계약(특정 보험회사의 보험만을 판매하는 계약), 우선 판매계약(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우선 판매하는 계약) 및 전통적·개방형 판매계약(특정 보험회사를 우대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으로 구분되고 있음

라. 보험계약자 보호 규제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해결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기구인 금융산업분쟁해결센터(FIDReC)²⁹⁾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³⁰⁾

23) Asia Pacific Insurance(2021), "Guide for Insurance Sales, Advisory and Distribution"

24) MAS, "Financial Adviser's Licence"

25)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Agent Registration"

26) MAS, "Insurance Broker Registration"

27) MAS, "Financial Adviser's Licence"

28) Asia Pacific Insurance(2021), "Regulatory Landscape and Issues in Bancassurance"

29) FIDReC는 2005년 싱가포르 MAS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독립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FIDReC, "About Us")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연락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해결 결과를 통보해야 함
- 보험회사의 해결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FIDReC에 민원을 재차 제기할 수 있음
- FIDReC의 해결 결과에 대해 여전히 만족하지 않은 보험계약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MAS는 보험회사가 파산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질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³¹⁾

- 싱가포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캡티브보험회사 제외), 손해보험회사(캡티브보험회사, 전문보험회사 제외)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해야 함
- 예금보험제도가 보호하는 보험계약은 회원 보험회사가 발행한 싱가포르 국내 보험계약으로 제한되며, 다음과 같은 보험종목이 있음³²⁾
 - 생명보험은 개인 및 단체 계약자를 대상으로 발행된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 장기상해 및 건강보험(단체보험 포함)을 포함함
 - 손해보험은 개인 계약자를 대상으로 발행된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재산보험, 외국인 가사도우미 보험이 있음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자본은 공인 보험회사(재보험회사 포함), 외국 보험인수단(Syndicate), 인가 재보험회사, 승인 MAT보험회사 등의 형태로 싱가포르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³³⁾

- 공인 보험회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를 설립하며 원보험업 및 재보험업을 선택하여 영위할 수 있음
- 외국 보험인수단(Syndicate)의 회원사들은 싱가포르에서 별도로 물리적 실체를 설립하지 않아도 원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음
 - 현재 Lloyd's는 싱가포르에 외국 보험인수단(Lloyd's Asia service company)을 설립함
- 인가 재보험회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가 없고 외국에서 싱가포르의 재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음

30) Life Insurance Association Singapore, "WHEN THINGS GO WRONG";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Consumers"

31) Singapore Statutes Online, "Deposit Insurance and Policy Owners' Protection Schemes Act 2011"

32) SDIC, "Scope of PPF Scheme Coverage PPF"

33) MAS, "Types of Insurance Entities"

- 승인 MAT보험회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싱가포르에 물리적 실체가 없고 외국에서 싱가포르의 MAT 보험과 관련 보험료 징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

5. 보험산업 구조

- 2021년 기준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24위 규모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를 넘는 등 성장성이 양호한 시장임³⁴⁾
 - 싱가포르는 세계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규모가 각각 16위, 32위인 국가임
 - 싱가포르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441.6억 미국달러(57조 7,039억 원)이며, 2011~2021년 전체 수입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8.5%임
- 또한, 2021년 기준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비중이 각각 77.8%, 22.2%로 생명 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인구 594만 명(2022년)의 작은 도시국가지만, 싱가포르의 생명보험시장은 동남아시아의 최대 생명보험시장임

〈표 4〉 싱가포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미국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생명보험	215(74.6)	225(73.4)	222(72.0)	258(73.7)	344(77.8)
손해보험	73(25.4)	82(26.6)	86(28.0)	92(26.3)	98(22.2)
전체	288	306	308	351	442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 연호

-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으로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아태 선진시장 중에서 GDP 대비 수입보험료(보험 침투도)와 1인당 보험료(보험밀도) 수준이 중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보험침투도는 9.3%로 아태 7개 선진시장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밀도는 6,742달러로 7개 아태 선진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34) Swiss Re(2013), "World insurance in 2012: Progressing on the long and winding road to recovery"; Swiss Re(2022), "World insurance: inflation risks front and centre"

〈표 5〉 아태지역 선진시장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 비교(2021년)

(단위: %, 미국달러)

구분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침투도 ¹⁾	보험밀도 ²⁾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홍콩	19.6	9,556	17.3	8,433	2.3	1,23
대만	14.8	4,804	11.6	3,772	3.2	1,032
한국	10.9	3,735	5.8	1,971	5.2	1,764
싱가포르	9.3	6,742	7.5	5,414	1.8	1,327
일본	8.4	3,202	6.1	2,347	2.2	855
뉴질랜드	4.8	2,339	0.8	403	4.0	1,936
호주	4.4	2,817	1.0	623	3.5	2,195

주: 1)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수입보험료/명목GDP

2)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수입보험료/총인구 수

자료: Swiss Re(2022), "World insurance: inflation risks front and centre"

○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총 234개 보험회사(재보험회사, 캡티브보험회사 포함)가 싱가포르 보험시장에서 영업 중임

- 원보험회사 중에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보험회사 수는 각각 18개, 62개, 9개이며, 재보험회사 중에서 생명재보험회사, 손해재보험회사, 종합재보험회사 수는 각각 3개, 48개, 9개임
 - 18개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7개 보험회사는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
- 캡티브보험회사 수는 85개가 있으며 손해보험업, 종합보험업을 영위하는 캡티브보험회사 수가 각각 81개, 4개임
- 재보험회사 수는 60개가 있으며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종합보험업을 영위하는 재보험회사 수가 각각 3개, 48개, 9개임
- 14개 외국 보험회사는 외국 보험인수단(Lloyd's Asia Scheme)의 회원사로서 싱가포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

〈표 6〉 싱가포르 보험회사 수(2022년)

구분	원보험업			재보험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종합보험업1)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종합보험업
보험회사	18	62	9	3	48	9
캡티브보험회사	-	81	4	-	-	-

주: 1) 종합보험업은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AXCO,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6. 생명보험시장 현황³⁵⁾

- 2021년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총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516억 싱가포르달러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1.8%임
 - 총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8~2019년에 둔화되었으나 2020년부터 2년 연속 2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3,030억 싱가포르달러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0.6%임
 - 총자산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7〉 싱가포르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변화 추이

(단위: 억 싱가포르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보험료 ¹⁾	금액	330	340	347	426	516	11.8
	증가율	21.1	3.1	2.0	22.7	21.1	
총자산	금액	2,029	2,094	2,445	2,856	3,030	10.6
	증가율	27.2	3.2	16.8	16.8	6.1	

주: 1) 총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업무를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AXCO,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생명보험시장은 전체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CR5)이 2021년 기준으로 81.7%로 대형사가 주도하는 시장임
 - 상위 5개사는 싱가포르 The Great Eastern Life(28.3%), 캐나다 Manulife(16.7%), 영국 Prudential Assurance(16.3%), 홍콩 AIA(12.6%), 싱가포르 NTUC Income Insurance(7.8%)임
- 생명보험시장은 국내 보험회사(3개)와 외국 보험회사(7개)가 함께 주도하고 있음
 - 2021년 10위권에 진입한 3개 국내 보험회사는 The Great Eastern Life(1위, 28.3%), NTUC Income Insurance(5위, 7.8%), Singapore Life(6위, 7.6%)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43.7%임
 - Singapore Life는 2017년에 생명보험업을 시작하였으며, 스위스 Zurich Life(2018년)와 영국 Aviva Singapore(2020년) 인수를 통해 2021년 기준 6위로 상승함
 - 상위 10개사 중에서 캐나다, 영국, 홍콩, 말레이시아, 프랑스, 일본 등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5.8%이고,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기타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3.0%에 불과함
 - 외국 보험회사 중에서 캐나다 Manulife는 시장점유율 16.7%로 2위를 기록함

35) 여기서 말하는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싱가포르 국내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업무(재보험 업무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됨

〈표 8〉 싱가포르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

(단위: 억 싱가포르달러, %)

순위 (2021)	회사명	2020년		2021년	
		총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총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싱가포르 The Great Eastern Life	111.2	27.9	145.9	28.3
2	캐나다 Manulife	53.6	13.5	86.4	16.7
3	영국 Prudential Assurance	70.2	17.6	84.2	16.3
4	홍콩 AIA	60.6	15.2	65.2	12.6
5	싱가포르 NTUC Income Insurance	38.5	9.7	40.0	7.8
6	싱가포르 Singapore Life	12.8	3.2	39.1	7.6
7	말레이시아 Etiqa Insurance	15.3	3.8	13.8	2.7
8	프랑스 AXA	9.0	2.3	9.1	1.8
9	영국 HSBC Insurance	5.9	1.5	8.3	1.6
10	일본 Tokio Marine Life	7.9	2.0	8.1	1.6
전체	총수입보험료 1)	398.5	100.0	516.2	100.0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CR3)		60.7		61.3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CR5)		83.8		81.7	
상위 10개사 시장점유율(CR10)		96.6		97.0	

주: 1) 총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의 모든 보험업무를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AXCO,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보유계약 총수입보험료에서 양로보험과 종신보험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종신보험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보유계약 총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비중은 양로보험과 종신보험이 각각 36.5%, 36.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정기보험이 9.8%를 차지함
 - 17.6%를 차지한 기타 상품은 주로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이 있음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저축성 상품보다 보장성 상품 수요 확대에 의해 종신보험이 급성장하고 있음
 - 2021년 종신보험 보유계약 총수입보험료는 2019년 71.5억 싱가포르달러에서 91.8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양로보험과의 규모 차이가 2019년 15.0억 싱가포르달러에서 1억 싱가포르달러로 줄어들었음

〈표 9〉 생명보험 상품별 총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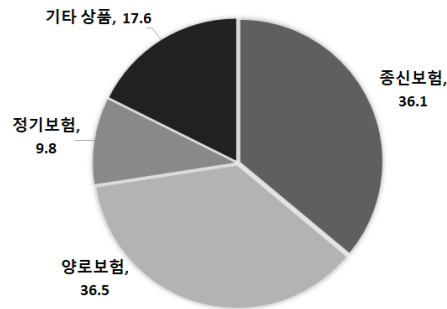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종신보험	7,148	7,802	9,181
양로보험	8,649	9,072	9,293
정기보험	2,099	2,315	2,492
기타 상품	4,114	4,501	4,493
합계	22,011	23,691	25,460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그림 1〉 생명보험 상품별 총수입보험료 구성비(2021년)

(단위: %)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생명보험시장에서 전속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금융자문업자는 주요 판매채널로서 보험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전속 보험대리점이 3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카슈랑스(32.1%), 금융자문업자(28.8%), 직판채널(6.0%) 순임
 -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어서 전통적으로 대부분 소비자가 싱가포르에서 보험대리점 등 대면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선호함
- 최근 5년간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추세를 보면 전속 보험대리점 및 방카슈랑스가 우세를 지키고 있으나, 금융자문업자가 점점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유력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
 - 이는 MAS가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 은퇴 설계 등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CM채널 등 직판채널의 보험 판매는 계약 건수 기준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나, 계약당 가입금액이 낮아서 보험료 기준으로는 많이 늘어나지 못함
 -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CM채널 생명보험 판매 건수는 2019년 9,971건에서 2021년 59만 1,282건으로 급증함

〈표 10〉 싱가포르 생명보험회사 판매채널별 총수입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억 싱가포르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속 보험대리점	보험료	125	129	118	153	171
	비중	38.0	38.0	34.0	36.0	33.1
방카슈랑스	보험료	122	119	125	124	166
	비중	37.0	35.0	36.0	29.2	32.1
금융자문업자	보험료	63	75	86	114	149
	비중	19.0	22.0	24.7	26.7	28.8
직판(CM, TM 등)채널	보험료	0.6	0.7	0.7	0.5	0.9
	비중	6.0	5.0	5.2	8.1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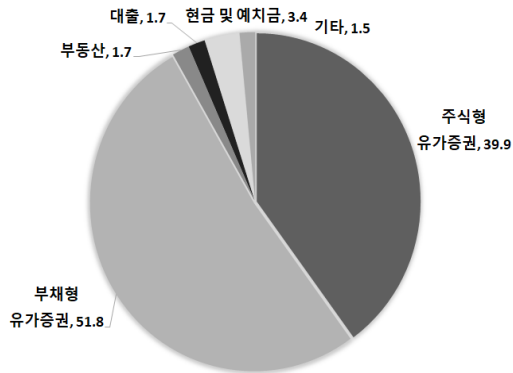
자료: AXCO,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부채형 유가증권과 주식형 유가증권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

- 2021년 기준 자산운용 구성비는 부채형 유가증권(54.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식형 유가증권(39.2%), 현금 및 예치금(2.5%), 부동산(1.3%), 대출(1.1%) 등의 순임
- 2017년과 비교할 때 2021년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구성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그림 2〉 2017년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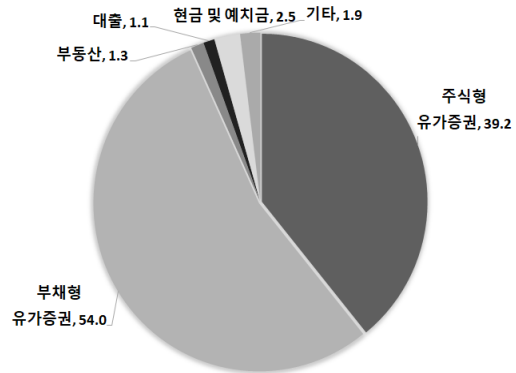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그림 3〉 2021년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 구성비

(단위: %)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7. 손해보험시장 현황³⁶⁾

- 2021년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총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94억 싱가포르달러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4%임
 - 총수입보험료가 2019년까지 매년 5% 이상 성장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최근 손해보험시장이 정체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약 110억 싱가포르달러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임
 - 총자산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근 확대되고 있음

〈표 11〉 싱가포르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변화 추이

(단위: 억 싱가포르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보험료 ¹⁾	금액	74	79	87	91	94	6.4
	증가율	6.0	7.6	10.0	4.5	3.7	
총자산	금액	98	98	102	105	110	2.9
	증가율	-2.8	0.2	4.0	2.4	5.3	

주: 1)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국내 손해보험,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업무를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AXCO(2022),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손해보험산업은 전체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CR5)이 34.8%로 시장집중도가 생명보험산업(CR5: 81.7%)과 비교해 크게 낮음
 - 상위 5개사는 싱가포르 NTUC Income Insurance(7.9%), 프랑스 AXA Insurance(7.9%), 미국 AIG Asia Pacific Insurance(7.5%), 벨기에 Cigna Europe Insurance(6.2%), 일본 MS First Capital Insurance(5.3%)임
 - 6~10위를 차지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21.6%이며, 상위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43.6%임
- 손해보험시장은 싱가포르 보험회사인 NTUC Income Insurance를 제외할 경우 외국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음
 -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보험회사인 NTUC Income Insurance는 시장점유율 7.9%로, 프랑스 AXA Insurance(7.9%), 미국 AIG Asia Pacific Insurance(7.5%)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36) 여기서 말하는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국내 손해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업무(재보험 업무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됨

- NTUC Income Insurance 외에도 싱가포르 보험회사인 Great Eastern General Insurance는 시장점유율 3.0%로 12위를 차지함
- 상위 10개사 중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48.5%이고, 기타 외국 보험회사를 포함할 경우 외국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8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상위 10위에 진입한 미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보험회사 수는 각각 4개, 3개, 1개, 1개임

〈표 12〉 싱가포르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순위 (2021)	회사명	2020년		2021년	
		총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총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싱가포르 NTUC Income Insurance	367.6	8.5	373.5	7.9
2	프랑스 AXA Insurance	305.6	7.0	371.0	7.9
3	미국 AIG Asia Pacific Insurance	339.5	7.8	351.8	7.5
4	벨기에 Cigna Europe Insurance	223.4	5.1	293.8	6.2
5	일본 MS First Capital Insurance	278.9	6.4	249.8	5.3
6	일본 MSIG Insurance	269.9	6.2	248.8	5.3
7	미국 Chubb Insurance	231.7	5.3	242.3	5.1
8	미국 Berkshire Hathaway Specialty Insurance	141.6	3.3	202.5	4.3
9	미국 Liberty Insurance	148.7	3.4	168.1	3.6
10	일본 Tokio Marine General Insurance	167.0	3.8	154.3	3.3
전체	총수입보험료1)	4,338.0	100	4,711.8	100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CR3)		23.3		23.3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CR5)		34.9		34.8	
상위 10개사 시장점유율(CR10)		57.0		56.4	

주: 1)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업무를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AXCO,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상품별 총수입보험료 비중은 자동차보험, 재산보험과 건강보험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24.6%), 재산보험(16.6%), 건강보험(13.9%), 일반 책임보험(8.8%), 고용주책임보험(8.7%) 등의 순임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상해보험, 기술보험, 보증 및 신용보험을 제외하고 기타 보험상품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함

〈표 13〉 손해보험 상품별 총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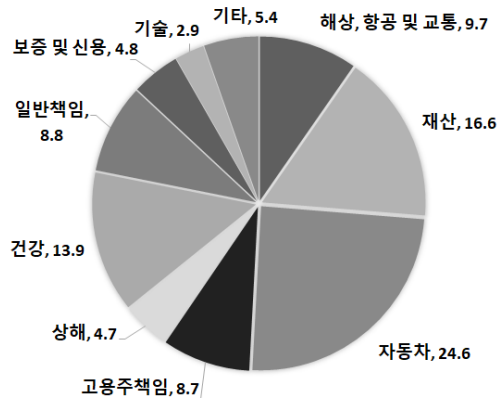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해상, 항공 및 교통	448	459
재산	667	781
자동차	1,127	1,159
고용주책임	389	408
상해	237	223
건강	591	653
일반책임	365	413
보증 및 신용	229	227
기술	137	136
기타	174	253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그림 4〉 손해보험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이 주요 판매채널로서 보험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총수입보험료 비중은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이 각각 50%, 32%인 반면, 직판채널, 방카슈랑스 비중은 12%, 6%임
 - 보험중개인은 상업 및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모집하는 반면, 보험대리인은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모집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보험대리인의 판매 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직판채널 및 방카슈랑스채널의 판매 비중은 상승함
 - 싱가포르 손해보험회사는 직판채널 중의 하나인 CM채널에서 자동차, 주택, 여행과 개인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채널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으로는 신용보험,³⁷⁾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여행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음

37) 싱가포르 은행에서 판매되는 신용보험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용보험이며, 대부분 싱가포르 은행은 신용보험을 주택담보대출 승인의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 14〉 싱가포르 손해보험회사 판매채널별 총수입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억 싱가포르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직판(CM, TM 등)채널	보험료	9	10	11
	비중	10	11	12
보험중개인	보험료	44	46	47
	비중	50	50	50
보험대리인 ¹⁾	보험료	30	30	30
	비중	35	33	32
방카슈랑스	보험료	4	5	6
	비중	5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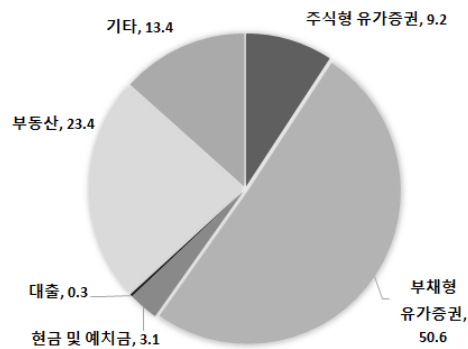
주: 1) 보험대리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함

자료: AXCO,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은 부채형 유가증권과 현금 및 예치금으로 주로 운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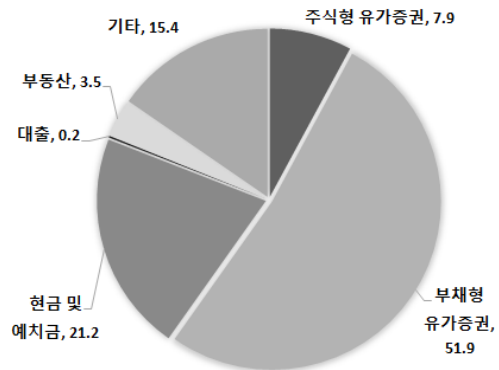
- 2021년 운용자산 구성비는 부채형 유가증권(51.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금 및 예치금(21.2%), 주식형 유가증권(7.9%), 부동산(3.5%) 순임
- 2017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운용자산 중에서 현금 및 예치금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부동산 비중은 감소함

〈그림 5〉 2017년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 구성비
(단위: %)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그림 6〉 2021년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 구성비
(단위: %)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I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 일본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최근 동향

요 약

일본에서는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가 디지털·신의료 기술을 결합한 상품·서비스 유상 제공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 2020년 이후 일본 보험회사들은 AI 신체 부위 사이즈 추정, AI 암 리스크 시뮬레이션, GPS·IoT 사고 예방 시스템, 웨어러블 원격 혈당 모니터링, 오픈API 헬스케어, AI·GPS 재난 예측 및 피난 정보 안내, Health Score Tec·딥러닝 질병 조기 발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성화 정책 시행과 보험산업 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라 보험회사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상품·서비스(인슈어테크)를 도입하는 사례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디지털 주무부처 신설과 정부·산업·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디지털 개혁 6법’을 제정하였음
 - 일본 보험업계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종전에 ‘사고 후 보장 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2015년부터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수술 후 요양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확대하여 보험의 포용력을 높이고 있음
 - 이에 일본에서의 인슈어테크 변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2020년 이후 주요 인슈어테크 운영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일본 인슈어테크는 2010년대 초 인터넷 상품 판매, 2015년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상품·서비스의 실험적 제공, 2020년 이후 디지털·신의료 기술 결합 상품·서비스 유상 제공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
 - 2010년대 초기 주로 ICT 기술을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초보적 수준을 거쳐 2015년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App, 웨어러블 기기 등을 주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였음
 - 2020년대부터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오픈API, 데이터 분석, 블루투스, 블록체인, GPS, 센서, 신의료 등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서비스에 피드백하고 있으며, 인슈어테크 제공 서비스도 질병 예방, 질병 조기 발견, 중증 예방, 치료 후 케어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메이지야스다생명(메이지야스다生命)은 ‘모두의 건활(健活) 프로젝트’의 서비스 라인업을 위하여 미국 Bodygram사가 제공하는 AI 신체 사이즈 측정 서비스인 ‘Bodygram’을 2023년부터 제공함¹⁾

- 동사는 고객의 건강 유지·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헬스케어 종합 서비스 브랜드인 ‘모두의 건활(健活)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제공하고, 2021년부터는 건강 서포트·캐시백 특약을 판매하고 있음
- 동 서비스는 BMI(체질량 지수) 개선에 의한 생활 습관 질환 예방 서비스로 총 12곳 신체 부위 사이즈 측정, 체지방·근골격량 측정, 측정 전후 비교, 자세 분석, 스트레스 평가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또한, 연령·신장·체중·성별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정면·측면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바디 라인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신체 각 부위 사이즈를 추정할 수 있음

○ SOMPO히마와리생명은 ‘암 리스크 시뮬레이터’ 서비스를 2023년 1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함²⁾

- 동 서비스는 질병 예방 서비스 플랫폼인 ‘LinkX 건강Try’에 구성된 ‘암 토털 지원 프로그램’ 하부 서비스로 이용자의 5년 이내 암 발병 위험 예측을 무료로 제공하는 히타지가 개발한 App 서비스임
 - ‘암 토털 지원 프로그램’은 암 예방·조기 발견, 암 발병 시 보장, 치료 후 케어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 케어 프로그램임
- 다만, 암 조기 발견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바이오 벤처 ‘HIROTSU 바이오 사이언스’의 ‘N-NOSE 검사’³⁾와 ‘SalivaTech’의 ‘Saliva 체크’⁴⁾의 유료 서비스 이용을 동사가 소개하고 있음
- 최근에는 건강상태 지수 개선이나 흡연자가 금연할 경우 매월 개선 단계별로 현행 적립금의 1~3%까지 추가 적립을 제공하는 변액보험상품을 2023년 5월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하였음⁵⁾

○ e디자인손해보험은 GPS, AI, IoT 등을 활용한 자동차종합보험 ‘&e(앤이)’를 2021년에 발표함⁶⁾

- 동 상품은 AI를 활용한 보험가입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보험서비스, 자동차 충격 시 스마트폰으로 콜센터에 자동 연결 및 제휴 수리 공장 안내, 사고 전·후 고객 차량 동영상 재현, 고객 바이오리듬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운전 상관관계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pp 전용 결합 상품임
- 원스톱 보험서비스에는 일본 Cinnamon AI사의 AI 보험증권 자동 인식 기술, 자동차 충격 시 자동 연결에는 이태리 OCTO Telematics사의 IoT 센서와 블루투스 기술, 사고 후 고객 차량 동영상 재현에는 GPS 기술 등이 사용됨

1) 明治安田生命(2023. 2. 6), “生活習慣改善につながるサービスとしてAI身体計測テクノロジー「Bodygram」を導入”

2) SOMPOひまわり生命保険(2022. 12. 14), “新機能「がんリスクシミュレーター」”

3) 2020년 1월에 실용화한 암-스크리닝 검사 ‘N-NOSE’는 지중에 생식하는 길이 약 1mm의 작은 ‘선충’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생체 진단기술로 금전적 부담이 9,800엔으로 저렴하며, 단 한 방울의 소변으로 암환자를 높은 확률로 찾아낼 수 있어 간편함

4) ‘Saliva 체크’는 한 방울의 타액이나 혈액을 ‘SalivaTech’에 보내게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대장, 췌장암, 구강암 등의 위험을 4단계로 판정해 주는 검사 키트임

5) 日本経済新聞(2023. 2. 20), “禁煙で保険積立金加算・SOMPOひまわり生命、変額型で初”

6) https://www.edsp.co.jp/company/company_005/pdf2/company_005_2022_01.pdf

- 또한, 안전 운전 지원 서비스 제공에는 Apple Watch의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과 ‘&e’가 수집한 고객 운전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함

○ 니혼생명(日本生命)은 자가 혈당 체크 서비스인 ‘혈당변동 체크 플랜’을 2021년부터 유상으로 제공함⁷⁾

- 동 서비스는 헬스케어 종합 브랜드인 ‘Wellness-Star☆’에 구성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하부 서비스로 이용자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측정 결과를 전용 클라우드에 입력, 동 데이터를 기초로 병원으로부터 원격으로 혈당·식사·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App 서비스임
- 동 서비스에는 미국 스타트업 Abbot사가 제공하는 원격 모니터링 툴과 웨어러블(FreeStyleLibre 측정기)을 활용하고, 당뇨병 전문의 의료 자문이 포함된 일본생명병원의 자원을 활용함
- 동사는 2022년까지 축적한 260만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뇨병·고혈압증·지질 이상 등의 질병 리스크 예측 모델을 구축·도입하고, 상품·서비스 개발 및 언더라이팅에 동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함

○ 다이이치생명(다이이치生命)은 B2B2C형 헬스케어 App 서비스 ‘QOLism’을 2021년에 시작함⁸⁾

- 동 서비스는 건강보험 직장조합⁹⁾ 등 기업·단체의 종업원 대상의 B2B2C형 헬스케어 플랫폼 ‘Healstep’ 하부 구성 서비스로 동사의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인 (주)QOLeader가 제공함
 - ‘Healstep’은 2020년, 2021년에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건강 데이터·질병 예방 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동 서비스는 운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모니터링 등 경제산업성 건강경영 기업 인증 기준 항목에 매칭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무관심 층에서 건강 고위험 층까지 건강개선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Accenture의 맞춤형 플랫폼 통합관리 엔진에 다수의 아웃소싱 기업이 오픈 API로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음
 - 이외에도 ‘TechFirm(App 개발)’, ‘Panasonic(멀티 웨어러블 융합)’, ‘SONY(식사 기록·분석)’, ‘오이시이 건강(식사 콘텐츠)’, ‘Oasis(체중 개선 운동)’, ‘Dents(상품권 발행)’, ‘Bodgram(신체 부위 사이즈 추정)’, ‘Lafool(스트레스 체크)’, ‘CureApp(금연프로그램)’, ‘GARMIN(웨어러블 기기)’ 건강지도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 아웃소싱에 참여하고 있음

○ MS&AD는 실시간 자연재해 피해 예측 기능을 제공하는 ‘cmap’ App 서비스를 2020년에 시작함

- 동 서비스는 일본에서 2위의 손해보험그룹 MS&AD와 요코하마국립대학·Aon 등이 공동 개발하여 2022년에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음¹⁰⁾

7) 日本生命(2021. 7. 27), “血液変動チェックプラン導入”

8) https://www.dai-ichi-life.co.jp/information/pdf/index_057.pdf

9) 일본 정부는 의료지출 억제에 위해 직장건강보험조합(약 1,500개)에 조합원 건강상태 개선 시 보험료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10) MS&AD(2020. 6. 5), “リアルタイム被害予測ウェブサイト「cmap.dev」の新機能について”

- 동 서비스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산·학이 공동 연구 개발한 성과로서 자연재해 발생 시 실시간 피해 건물 예측, 홍수·산사태 리스크 맵 등의 다양한 재난·방재·예방 정보를 Web·App·SNS 등에서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임
- 실시간 제공 정보는 기상정보, 30분 단위의 홍수 예측 정보, 발생 후 시에 의한 피해 분석, 방재 디지털 대쉬보드, 대비장소 위치와 공실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
- 동 서비스에는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피해 추정 기법, 기상 데이터 또는 가상 경보·주의보 데이터를 활용, ‘방재 대시보드’에서 태풍 예상 경로, 태풍 예상 경로 데이터를 이용한 위험 분석분포 산출, 가상 경보·주의보 시나리오 작성, ‘cmap’ 비교를 통한 정밀도 검증 등의 연구·기술이 활용되었음

○ SOMPO히마와리생명¹¹⁾은 AI 건강리스크 예측에 의한 질병 예방 서비스 플랫폼 ‘LinkX 건강Try’ App을 개발하여 2020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음¹¹⁾

- 동 서비스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결과(혈압, 혈당치, 지질 대사)의 스마트폰 사진 전송으로 향후 6년간 생활습관 질환 리스크를 예측하고, 얼굴 사진 스마트폰 전송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판정하며, 문진 항목에 대답할 경우 생활습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또한, 건강상태 결과를 기초로 건강 관리나 생활 습관 개선에 필요한 건강관리 자문 서비스도 제공됨
- 건강진단 결과 사진의 데이터 인식에 미국 스타트업 Omniscience사 기술, 생활습관 질환 리스크 예측에 도시바DS 기술, 자가 문진에 이스라엘 스타트업 Binah.ai의 화상 카메라 건강데이터 추출과 AI, 딥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됨
- 동사는 판매중인 수입보장보험, 여성 암보험, 치매보험 등에 동 서비스를 탑재하고, 건강상태 개선 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동사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2025년까지 신계약의 90% 비중으로 확대하는 등 건강증진형 보험회사로 차별화할 계획임

11) SOMPOひまわり生命(2020. 7. 9), “「リンククロス 健康トライ」の提供開始”

〈표 1〉 일본 보험회사의 2020년 이후 InsurTech 도입 현황

구분	서비스명	시행 연도	주요 내용	InsurTech 기업	주요 도구·기술	용도
메이지야 스다생명	Bodygram	2023	헬스케어 서비스	Bodygram	AI	신체 사이즈 측정
SOMPO 히마와리 생명	암 토탈 서포트	2023	암 리스크 시뮬레이터	히타치 제작소	AI, 데이터 분석	암 조기 발견
e디자인 손해보험	&e(앤이)	2021	안전운전 부대 자동차종합보험	Cinnamon AI, OCTO Telematics, Apple	GPS, AI, IoT, 데이터 분석	자동차 안전 운전, 사고 예방 시스템
니혼생명	혈당 변동 체크	2021	자가 혈당 체크	미국 Abbot,	FreeStyleLibre	원격 보건 상담
다이어치 생명	QOLism	2021	B2B2C형 헬스케어 서비스	TechFirm, SONY, Bodgram, GARMIN 등	오픈API, 데이터 분석, 웨어러블 기기	직장 종업원 건강관리
MS&AD	cmap	2020	실시간 피해예측 Web 서비스	다수의 산·학 협동 연구	AI, GPS, 기상 예측, 기상 시뮬레이션	사전 피해예측, 피난정보
SOMPO 히마와리 생명	LinkX 건강Try	2020	질병 조기 발견, 건강리스크 예측	Omniscience, Binah.ai, 도시바 DS 등	AI, Health Score Tec, 딥러닝	질병 위험 측정, 스트레스 평가, 자가 문진, 건강 자문

자료: 각 보험회사 공시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2. 일본 보험회사의 은행대리업 진출 현황

요 약

일본의 은행대리업은 시행 초기 은행 점포 감소 보완을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은행 기업이 임베디드 금융의 내재화를 목적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음. 은행대리업 허가 건수는 2010년 12건에서 2022년 92건으로 증가였으며, 보험권에서는 다이이치생명, 소니손보, 소니생명, 라쿠텐손보, 라쿠텐생명, 보험히로바, Gift Your Life 등이 은행대리업에 진출하였음

- 최근 일본에서는 금융·비금융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대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2006년에 은행대리업제도가 시행되어 기업이 은행대리점을 개설하여 고객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이에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은행대리업제도를 살펴보고, 최근 일본 비은행기업의 은행대리점 진출 현황과 보험회사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일본은 2000년대 초 시작된 금융의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2005년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 대리업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은행 구조조정과 대형화로 인해 점포 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과 새로운 판매채널 확보, 점포 공동 운영을 통한 은행 점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도입됨
 - 이에 2002년 4월 은행 상호 간 대리점 개설 목적인 ‘금융기관대리점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4월에 은행대리업 정의와 은행대리업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은행대리업제도가 시작됨
- 은행대리업제도(Bank Agency System)는 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외의 자가 은행을 위해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로 은행대리점을 영위하는 업무를 의미함
 - 일본 은행법 제2조 14항에서는 보험업법의 보험대리점 정의¹²⁾와 유사하게 은행대리업을 ‘은행을 위해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실시하는 영업’으로 정의함
 - 은행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는 예금, 대출, 환거래, 채무보증, 어음인수, 금전 수납·보호·보관, 환전으로 한정됨
 - 은행대리업자는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및 금융기관으로서 소속 은행의 위탁을 받거나 위탁받은 은행대리업자의 재위탁을 받는 자를 의미함¹³⁾

12)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대리 또는 매개하는 자(일본 보험업법 제2조 제21항)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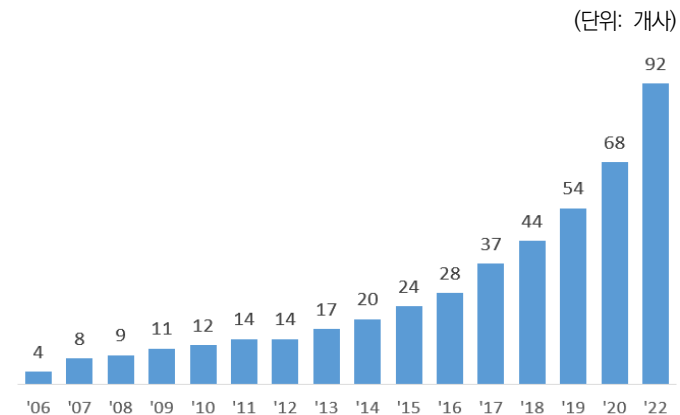
○ 은행대리업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빅테크, 유통, 보험업 등의 비은행 업종에서 은행대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초기에는 은행대리점을 통한 고객 접근성 개선과 점포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은행·타 은행(지방은행 포함) 간 업무 대리 중심으로 은행대리점을 주로 활용함
- 그러나 최근에는 비은행 기업이 중심이 되어 자사 플랫폼에서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¹⁴⁾ 기능을 탑재하여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하고 있음
 - 비은행 기업은 고객에게 은행 연계 전용계좌를 통한 상품·서비스 구매 및 결제 편의성 제고, 고객 접점 확보, 고객 자금 이탈 방지, 그리고 업무 대리 수수료 수입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점포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 중임

○ 금융청에 의하면 2022년 12월 말 현재 122개 기업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¹⁵⁾

- 이 중에서 은행대리업에 진출한 비은행 기업 수는 2010년 12개사에서 2022년 92개사로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비은행기업의 은행대리점 개설이 활성화되고 있음
- 최근에는 보험, 증권(松井증권), 백화점 유통(高島屋), 통신(NTT Tocomo), 철도운송(동일본JR), 항공(JAL, ANA), 발전(중부전력) 업종 등이 은행대리업에 진출하였음

〈그림 1〉 일본 비은행 기업의 은행대리업 진출 추이



자료: <https://8knot.nttdata.com/trend/8760131>을 기초로 최근 정보를 보완함

13) 일본 은행법 제2조 제15항, 은행법 제52조의36

14) 비금융 기업이 자사의 플랫폼에 금융상품·서비스를 중개·판매하는 등 금융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의미함

15) 金融庁(2023. 1. 1), “銀行代理業者許可一覧”

- 일본 다이이치(第一)생명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대리점에 진출하고, 은행서비스 기능이 탑재된 전용 बैं킹 서비스를 2023년 1월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함¹⁶⁾
 - 동사는 2010년 IPO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수익원을 발굴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일본 생명보험업계 2위 회사로서 100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다이이치생명홀딩스의 자회사임
 - 동사는 인터넷 전업은행인 SBI Net Bank와 라쿠텐(楽天)은행으로부터 각각 은행대리점 자격을 취득하고 '다이이치생명 NEOBANK', '라쿠텐은행 다이이치생명 지점' 전용 App बैं킹 서비스를 론칭함
- '다이이치생명 NEOBANK'는 스마트폰에서 다이이치생명 연계 전용 은행계좌 개설, 은행계좌 잔액 확인, 예금·결제·대출 기능, 고객 자산관리 정보와 시뮬레이션 등의 확인 기능이 탑재된 서비스임
 - 제공 중인 예금 서비스는 엔화 예금, 외화 예금, 외화 적립이며, 결제 서비스는 송금, 이체, 직불카드 발급, 앱카드 결제, 전국 ATM 이용, 대출 서비스는 카드론, 모기지, 교육비 대출 등임
 - 동사는 2023년 중 '다이이치생명 NEOBANK'에서 계열사가 개발한 IRA, 연금보험, ISA, 투신상품 등 고객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연계 전용 은행계좌를 통해 보험금·급부금 지급, 보험료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자금 이탈 방지를 통해 고객 점점 확보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계획임
 - 향후 동사는 자사 보험상품 판매 플랫폼에 '다이이치생명 NEOBANK'를 탑재하여 보험·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동사 전국 1,200개 이상의 점포(지점 및 영업소)를 통해 은행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은행과 점포 공동 운영계획도 검토하고 있음
- 소니손보는 보험·은행 상품 교차 판매를 위해 현재 방카슈랑스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소니은행과 은행대리점 계약을 2023년 2월에 체결하였음¹⁷⁾
 - 소니그룹의 자회사인 소니손보는 방카슈랑스 상품 제공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룹 관계사인 소니은행과 은행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주요 제공 서비스는 소니손보 전용 은행계좌 개설, 직불카드, 예금, 송금, 입·출금 서비스 등임
 - 동사는 2023년 2월부터 소니손보와 소니은행이 공동으로 해외여행보험과 해외 신용·직불 겸용카드를 각각의 판매채널에서 번들링으로 제공하기 시작함
 - 소니생명도 2006년에 은행대리점 자격을 취득하여 소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고 있음
- 라쿠텐(楽天)손보는 고객에게 전용 은행계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룹 관계사인 라쿠텐(楽天)은행과 은행대리점 계약을 2019년에 체결하였음¹⁸⁾

16) 第一生命(2023. 1. 11), “住信SBIネット銀行のNEOBANKを活用”

17) ソニー損保(2023. 1. 20), “ソニー損保とソニー銀行、商品・サービスの相互取り扱いを開始”

18) 楽天損保(2019. 6. 3), “楽天損保、楽天銀行と損害保険代理店契約を締結”

- 동사는 통신판매 중심의 중소형 손해보험회사로 생명보험회사, 인터넷 은행, 증권사, 인터넷 쇼핑몰 등 150여 개 이상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인 라쿠텐(樂天)그룹 자회사임
- 동사는 고객에게 라쿠텐손보 전용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라쿠텐(樂天)생명도 2016년에 은행대리점 자격을 취득하여 고객에게 전용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보험대리점도 고객에게 라인업을 통한 금융상품 제공을 위해 은행대리점에 진출하고 있음

- 내방형점포 중점으로 영업중인 보험대리점(GA) 기업 (주)보험히로바는 고객에게 보험·은행상품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에 야마구치(山口)은행 등과 은행대리점 계약을 체결함¹⁹⁾
 - 동사는 고객에게 야마구치은행 등의 예금, 담보대출, 현금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추가로 은행과 공동점포를 운영하여 내방형점포에서 상품 라인업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보험대리점(GA)인 (주)Gift Your Life도 소니은행과 은행대리점 계약 체결을 2022년 11월에 발표한 바 있음

〈표 2〉 일본 보험회사의 은행대리점 진출 현황

구분	다이이치생명	소니손보	라쿠텐손보	보험히로바 ¹⁾	Gift Your Life ¹⁾
진출시기	2023년	2023년	2019년	2017년	2022년
소속 은행	SBI Net Bank, 라쿠텐은행	소니은행	라쿠텐은행	야마구치은행, 기타큐슈은행, MOMiJI은행	소니은행
은행 특징	인터넷 전업	인터넷 전업	인터넷 전업	지방은행	인터넷 전업
대리 업무	연계 계좌 개설, 잔액 확인, 예금, 결제, 대출	연계 계좌 개설, 직불카드, 예금, 송금, 입·출금	계좌 개설	연계 계좌 개설, 예금·대출·카드, 점포 공동 운영, 고객정보 활용	연계 계좌 개설, 예금·대출·카드

주: 1) 비전속 보험대리점(GA)임
자료: 각 회사 공시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19) 保険ひろば(2017. 2. 8), “銀行代理業の開始について”

3. 중국 개인연금 제도의 시행 현황

요 약

중국 국무원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2년 4월 새로운 개인연금 제도 추진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이에 연금가입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별 특성을 파악한 후 노후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함. 보험회사는 가입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중국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한 데 이어 203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6~59세)는 8억 7,55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구는 2억 8천만 명(19.8%), 65세 이상 인구는 2억 980만 명(14.9%)을 차지함
 -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국은 2025년까지 3억 명(20%)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은 남성 60세, 여성은 50세(간부 55세)이나, 노동력 감소와 사회 부양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증신증권은 현재의 퇴직연령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연금보험 적자가 7조 위안이 넘을 것으로 예측한 반면, 퇴직연령을 65세로 올릴 경우 중국의 연금보험은 약 8조 위안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함
- 중국 주민들은 보험상품 가입, 정기 건강검진, 양로서비스 관련 정보 검색 등을 통해 미리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시 주민의 노후 대비 목표액은 약 83만 6,400위안(약 1억 5,869만 원)임²⁰⁾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4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개인연금 제도 추진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중국의 연금체계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양로보험(1층), 퇴직연금과 직업연금으로 구성된 기업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 양로보험은 공적연금으로 강제가입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가입률이 높으나,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며, 이로 인해 연금체계의 불균형이 초래됨

20) 2022년 12월 23일 중국 노년학·노년의학학회 고령화 금융 분과(中国老年学和老年医学学会老龄金融分会), 칭화대학 실버경제 건강·재산 발전지수 과제팀(清华大学银色经济与健康财富发展指数课题组), 다자보험그룹(大家保险集团)은 공동으로 「중국 도시 양로 서비스 수요 보고서 2022(中国城市养老服务需求报告2022)」를 발표함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향후 공적연금의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연금 체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중국 국무원은 2022년 4월 「개인연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个人养老金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가입대상은 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며, 개인연금 계좌와 개인연금자금 계좌 개설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12,000위안(약 219만 원)까지 납부 가능함
 - 개인연금 계좌는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설할 수 있고, 개인연금자금 계좌는 상업은행 채널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연금 상품 투자, 개인소득세 납부 등이 가능함
- 새로운 개인연금 제도는 2022년 11월 북경, 천진, 상해 등을 포함해 36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했으며, 개인연금 소득세 세율은 7.5%에서 3%대로 파격 인하하며 가입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함²¹⁾
 - 가입자는 종합 소득세나 경영 소득세에서 납부 한도를 기준으로 최대 5,400위안(약 102만 원, 최고 세율 45% 적용)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금가입자는 개인연금 계좌에 납입된 자금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 별 특성을 파악한 후 노후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함

- 중국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²²⁾에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기준 18개의 보험상품, 137개의 펀드상품, 465개의 은행 저축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개인연금 계좌에 납입한 자금은 보험상품, 펀드상품, 은행 저축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을 살펴보면 가입나이, 최저보증이율 등 차이가 있음
 - 상품별 공시이율을 살펴보면, 보험상품 4~5.7%, 펀드상품 -0.16~5.79%, 은행 저축상품 2.05~4%임

〈표 3〉 중국의 개인연금 보험상품

보험회사	중국생명보험		중국인민생명보험		태평생명보험	
가입나이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자		28~85세		28~70세	
납입기간	보험회사와 약정		종신 또는 장기		종신 또는 장기	
납부방식	일시납입, 정기납입, 추가납입		최초보험료, 정기추가납입, 수시추가납입		일시납입, 정기납입, 추가납입	
최저보증이율	안정형 2.0%	적극형 0.0%	안정형 3.0%	적극형 0.5%	안정형 2.0%	적극형 0.0%
공시이율	안정형 4.5%	적극형 5.0%	안정형 4.8%	적극형 5.1%	안정형 4.0%	적극형 5.1%
지급기간	종신 및 확정(10·15·20년)		종신 및 확정(10·15·20·25년)		종신 및 확정(10·20년)	
보험회사	태평양로보험		태강생명보험		국민양로보험	
가입나이	30~80세		0~70세		28~95세	
납입기간	보험회사와 약정		종신 또는 장기		종신 또는 연금수령 만료 24시까지	
납부방식	최초보험료, 정기추가납입, 수시추가납입		일시납입, 추가납입		최초보험료, 추가납입, 이월납입	
최저보증이율	안정형 3.0%	적극형 0.55%	안정형 2.85%	적극형 0.5%	안정형 3.0%	적극형 0.0%

21) <http://hb.people.com.cn/n2/2022/1107/c194063-40184024.html>

22) <http://si.12333.gov.cn>

〈표 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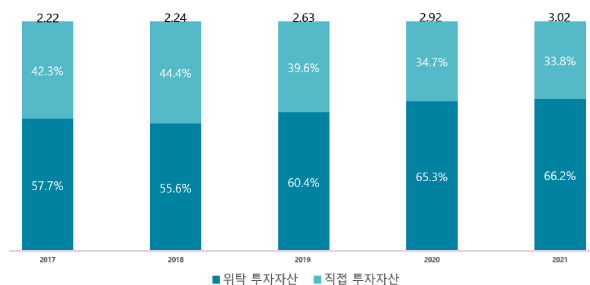
보험회사	태평양로보험		태강생명보험		국민양로보험	
공시이율	안정형 5.1%	적극형 5.7%	안정형 5.05%	적극형 5.5%	안정형 5.15%	적극형 5.6%
지급기간	종신 및 확정(10·15·20·25년)		종신 및 확정(10·15·20·30년)		종신 및 확정(10·20년)	

자료: 각 보험회사 상품소개 및 기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보험회사는 가입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개인연금 가입자 수는 2,817만 명으로 새로운 개인연금 제도 실시 후 3개월 만에 크게 증가함
 - 평균 2,316위안(약 43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는 최대 납부 가능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며, 가입자는 개인연금 상품의 다양화, 수익률 예측 어려움 등으로 개인연금 가입 여부를 고민함²³⁾
- 현재 보험상품, 펀드상품, 은행 저축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험은 상대적으로 상품의 종류가 적음
 -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이미 세금유예형 연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기존 상품을 개인연금 상품에 편입시켜 운용할지 혹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지 고민하고 있음
-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자산은 최근 5년 동안 약 120% 증가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중국 연금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그림 2〉 참조)²⁴⁾
 - 2023년 1월 미국 금융투자관리 및 보험회사인 프린시플 파이낸셜그룹(Principal Financial)은 중국 건설은행연금관리유한공사(CCB Pension Management Co Ltd)의 지분 17.6%를 취득했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²⁵⁾
 - 2022년 12월 상하이 와이탄에서 열린 제4회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영국 슈로더 자산운용사(Schroders Investment Group)는 개인연금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함

〈그림 2〉 2017~2021년 사회보장기금 자산규모
(단위: 만억 위안화, %)



자료: EY(2023), “中国养老金报告”

23) http://www.ce.cn/xwzx/gnsz/gdxw/202302/22/t20230222_38405627.shtml

24) <https://finance.sina.com.cn/tech/roll/2022-12-10/doc-imxweyqp1864884.shtml>

25) http://www.cbimc.cn/content/2023-01/09/content_475191.html

4. 대만 신용생명보험 시장 동향

요 약

계약자 사망 시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이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음. 대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신용생명보험을 주택담보대출에 끼워파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용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대출이율 우대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2021년 15개 보험회사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출고객의 신용생명보험 가입률이 20%대 초반에 불과함. 대만 금융당국은 신용생명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발표함

-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고객이 사망 시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대만 명칭, ‘주택담보대출생명보험’이라 함)이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음
 - 계약자 사망 시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정기생명보험과 달리 신용생명보험은 계약자 사망 시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음
 - 가입 목적 외에도 일반 정기생명보험과 비교할 때 신용생명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표 4〉 대만의 신용생명보험 및 일반 정기생명보험 특징 비교

보험유형	신용생명보험	일반 정기생명보험
수익자	대출 은행	계약자 지정(예: 가족)
보험가입금액	계약체결 후 조정 불가능	조정 가능
보장 기간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과 같거나 짧음	통상 10~30년
보험료 부담	저렴	신용생명보험보다 비쌈
보험료 납입방식	일시납·분기납	분기납
보험계약 현금가치(해약금)	없음	통상 없음
건강검진	불필요	통상 필요
가입 목적	가족의 부채 부담 방지	가족의 생활비 마련

자료: 房地產筆記(2020), “一次搞懂「房貸型壽險」優缺點!”

- 현재 대만에서 판매 중인 신용생명보험은 계약자 사망 시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상해보험금, 중대질병보험금(예: 암보험금), 소득보장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또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기간이 지나갈수록 보험가입금액이 감소하는 변동형 상품과 전체 보험기간에 보험가입금액이 증감하지 않는 고정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은행이 계약자(대출고객) 사망으로 인한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 보험 판매수익과 계열 보험회사(존재 시)의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으므로 대만 은행들은 신용생명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은행이 사망 대출고객의 유산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지만 비용, 기간,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출금의 회수율이 100%에 못 미칠 것임

○ 대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신용생명보험을 주택담보대출에 끼워파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용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대출이율 우대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끼워팔기 외에도 더 높은 대출 한도, 더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일정한 대출을 보증하는 행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생명보험을 설명하는 행위는 모두 대만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됨
- 대만 금융당국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 대출고객이 사망 시 은행이 쉽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대출 은행의 대출이율 우대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2021년 전체 21개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15개 보험회사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출고객의 신용생명보험 가입률이 20%대 초반에 불과함²⁶⁾

- 15개 보험회사 가운데 프랑스 BNP Paribas Cardif Assurance 및 대만 TCB Life의 신용생명보험 시장점유율은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²⁷⁾
 - 대만 TCB Life는 프랑스 BNP Paribas Cardif Assurance가 대만 2대 은행인 TCB은행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생명보험회사이며, TCB은행은 대만에 270개 영업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 많은 생명보험회사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고객의 신용생명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비싼 보험료, 불필요한 보장내용 등이 있음
-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대출고객 응답자 중에 71.2%가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이는 대출고객의 신용생명보험 수요가 존재하지만 현재 판매 중인 신용생명보험이 대출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26) 財團法人保險事業發展中心, “保險商評查詢”(https://insprod.tii.org.tw/Query.aspx); Hami書城(2020), “3原則挑房貸壽險 債不留家人”

27) Yahoo TW(2022), “房市價量齊揚 風險意識提高 投保意願大增”

〈표 5〉 대만 신용생명보험의 보장내용 예시

(단위: 대만달러)

보장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
	육상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
	수상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
	공중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
고도장해 보험금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고도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000만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육상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
	수상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
	공중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3,000만
1~6급 장애보험금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월 10만(총 100개월)
	상해 또는 질병으로 2~4급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월 10만(총 75개월)
	상해 또는 질병으로 5~6급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월 10만(총 50개월)
중대 화상 보험금	중대 화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500만/년
특정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
해외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해외 사고 한정)
	육상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해외 사고 한정)
	수상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해외 사고 한정)
	공중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해외 사고 한정)

주: Chubb 대만 법인의 신용생명보험 보장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자료: STOCK FEEL(2022), “房貸壽險 | 房貸壽險是什麼? 房貸壽險類型有哪些? 房貸行壽險試算!”

○ 대만 금융당국은 신용생명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발표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 은행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유인 및 대출고객의 신용생명보험 수요가 존재하지만,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생명보험은 은행과 대출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은행들이 대출고객이 필요하지 않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신용생명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질 우려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일부가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어 많은 대출고객은 은행에서 대출이율 우대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음²⁸⁾
- 대만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보험모집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신용생명보험 상품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2012년에 신용생명보험 모집 시의 준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에 은행이 계약자로서 신용생명보험을 대출고객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회사의 정기납 보험상품 개발을 요구함

28) 中時新聞網(2022), “房貸壽險具潛力 銀行力推”

- 2016년에는 2012년에 발표된 신용생명보험 모집 시의 준수사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보험모집인에 대한 교육 시행을 요구함
- 2019년에 신용생명보험의 모집 시 준수사항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2023년에 신용생명보험의 주계약 보장내용을 사망보험금(고도장해 보험금 포함), 장례비, 소득보증보험금으로 제한하는 상품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표 6〉 대만 금융당국의 신용생명보험 규제방안

연도	주요 내용
2012	•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대출 조건으로 설명하는 행위 및 신용생명보험을 주택담보대출에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 • 은행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때 계약자에 대한 적합도 평가 시행 • 신용생명보험 해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 대출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 외의 일반 정기생명보험 제공 • 신용생명보험 모집 시의 준수사항을 보험회사 내부 관리와 감사제도에 반영하도록 요구
2013	• 은행이 계약자로서 대출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 금지 • 일시납 및 정기납 신용생명보험 개발 요구
2016	•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신용생명보험 모집 시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시행
2019	• 신용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해 적합도 평가를 실시할 때 모집인과 다른 사람을 선정
2023	•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보장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신용생명보험 상품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자료: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12), “為健全銀行業風險管理, 確保金融消費者權益並減少爭議, 銀行業於共同行銷或合作推廣房貸壽險商品業務時應遵循之相關事項如下, 請轉知會員辦理, 請查照”;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19), “保險業不得勸誘客戶貸款買保單 強化控管不當招攬行為”;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17), “茲重申銀行(包括信用合作社)辦理房貸壽險業務應遵循事項, 請轉知所屬會員機構切實辦理, 並請依說明二事項辦理, 請查照” 등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5. 싱가포르 통합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SGFinDex) 출시²⁹⁾

요 약

싱가포르 정부는 SGFinDex(Singapore Financial Data Exchange) 시스템을 출시함. 이는 민간 기관과 정부기관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공공디지털 인프라임. 싱가포르 국민은 SGFinDex 시스템을 통해 저축, 보험, 투자 등 개인 금융계좌와 주택구입, 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계좌에 관한 개인 금융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목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싱가포르에서는 민간이나 정부기관이 보유한 개인 금융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여 조회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싱가포르에서는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표준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이 낮고 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SGFinDex 시스템을 개발하며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보유한 소비자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세계 최초의 공공디지털 인프라를 출시함
 - SGFinDex 시스템은 민관협력으로 개발되었고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12월 시스템을 최초 출시한 뒤 2022년 11월 이를 추가 개편함
 - 싱가포르 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신원확인 and 온라인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에 흩어진 소비자 금융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음
- 현재 SGFinDex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능한 개인 금융정보는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은행, 보험에 관한 정보와 정부기관이 보유한 투자 및 사회보장계좌에 관한 내용임
 - 싱가포르 국민은 은행 관련 개인 금융정보로 당좌예금 및 저축예금 잔액, 고정예금 잔액, 미결제 신용 카드 잔액, 대출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싱가포르 국민은 보험 관련 개인 금융정보로 보험상품 종류, 해약 시 만기일 등을 포함한 보험증권의 세부내용, 보장내역, 보험금 지급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SGFinDex 시스템이 최초 출시될 당시에는 보험에 관한 정보가 시스템에 통합되지 못했으나 2022년 1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됨

29) <https://www.lia.org.sg/news-room/financial-sector-news/2022/launch-of-singapore-financial-data-exchange-sgfindex-phase-2b/>

- 싱가포르 국민은 투자 관련 개인 금융정보로 중앙예탁결제원(Central Depository (Pte) Limited; CDP)³⁰⁾이 보유한 주식, 채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싱가포르 국민은 사회보장계좌 관련 개인 금융정보로 중앙적립기금제도(Central Provident Fund; CPF)가 보유한 보통계좌(주택구입, 교육비 등), 특별계좌(노령급여), 의료저축계좌(병원치료, 의료급여 등), 퇴직계좌(60~65세까지의 정기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앙적립기금제도(CPF)는 싱가포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구입, 노령연금, 의료급여를 충당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장과 근로자의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함

〈표 7〉 SGFinDex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개인 금융정보

은행	보험	투자: 중앙예탁결제원(CDP)	사회보장계좌: 중앙적립기금제도(CPF)
• 당좌예금 및 저축예금 잔액 • 고정예금 잔액 • 미결제 신용카드 잔액 • 대출 잔액 등 • 유닛 트러스트(Unit Trust) • 기타	• 보험상품 종류 • 해약 시 만기일 등을 포함한 보험증권의 세부 내용 • 보장내역(상품 유형, 보험금액, 입원 한도, 만기일 등)의 세부 정보 • 보험금 지급 정보(총 보험금 지급액, 보험금 지급 빈도 수 등) • 기타	• 주식 • 채권 • 유닛 트러스트(Unit Trust) • 구조화금융상품¹⁾ • 기타(우선주, 펀드 등)	• 중앙적립기금제도(CPF) 보통계좌, 특별계좌, 의료저축계좌, 퇴직계좌에 대한 잔액 • 싱가포르 공공주택당국(HDB)²⁾ 대출에 대한 월 상환액 • 싱가포르 공공주택당국(HDB) 대출에 대한 미결제 잔액 • 기타

주: 1) 구조화금융상품(Structured product)이란 금융상품의 수익이 투자자의 니즈에 맞춰 지정된 기초자산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상품을 의미함

2)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

자료: <https://www.sgfindex.gov.sg/whatsnew/index.html>

○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은 보안 면에서 뛰어남

- 싱가포르 국민은 정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MyMoneySense³¹⁾나 특정 민간 금융기관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특정 민간 금융기관이란 SGFinDex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은행 부문에서는 Citi, HSBC, MayBank 등이, 보험 부문에서는 AIA, AXA, Great Eastern, Income, Manulife, Prudential, Singlife with Aviva(Singlife)가 있음
- SGFinDex 시스템은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있으며, 소비자 금융정보가 플랫폼으로 전송되기 전 암호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안에 뛰어남

30) 중앙예탁결제원(CDP)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출자한 자회사임

31) <https://www.moneysense.gov.sg/>

- 해당 시스템은 개인 금융정보를 전송하지만 저장하거나 읽지 않고 사용자가 금융정보 수신을 위해 승인한 플랫폼에서만 암호화된 정보가 해독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싱가포르 국민은 SGFinDex 시스템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 재무목표를 설계할 수 있음

- SGFinDex 시스템 사용자는 다양한 금융정보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현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재무목표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음
 - 특히,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MyMoneySense 웹페이지는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재무목표를 안내하고 개인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함
- 싱가포르 국민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적정 보험 보유 여부와 보장공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음

○ SGFinDex 시스템은 현재 사용자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금융권 외 기타 산업으로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SGFinDex 시스템을 이용하는 활성사용자는 한 달 기준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며³²⁾ 매달 120만 건의 금융정보가 검색됨
- 싱가포르 정부는 SGFinDex 시스템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추가·보완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해당 시스템을 금융권 외 기타 산업으로 확장할 계획임

32)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2/financial-planning-for-singaporeans-enhanced-with-insurance-data-on-sgfindex>

6.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성별격차 문제와 해결에 관한 정책 추진 동향

요 약

호주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여성의 연금 급여 수준이 남성보다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음. 이에 호주 퇴직연금협회(ASFA³³⁾)는 호주 정부와 기업이 유급 육아휴직 대상자를 수혜자로 이들의 퇴직연금계좌에 법정 사용자부담금(SG³⁴)을 지급해 퇴직연금계좌에서 성별격차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함. 한편 호주 정부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세금감면 혜택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관련 법안을 현재 추진 중임

○ 호주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로 법정 사용자부담금(SG)을 도입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호주는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1992년 호주 정부는 법정 사용자부담금(SG)을 도입하였고,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 수준에 비례하는 금액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
 - 법정 사용자부담금(SG)은 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 급여의 3% 수준이었으나 2025년까지 1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임³⁵⁾
- 2022년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약 1,700만 명으로 이는 호주 전체 인구(2,570만 명)의 약 66.1%에 해당하며 퇴직연금계좌 수는 현재 2,300만 개에 달함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액을 저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은퇴 시 남녀의 급여액 격차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옴

- 2020년 6월 60~64세 남성이 보유한 퇴직연금계좌 잔액의 중위 값은 181,000호주달러(약 1억 6,000만 원)이나 여성의 경우 139,000호주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그침
 - 이는 남성의 퇴직연금계좌 저축액이 여성보다 약 23.1% 더 많음을 의미함

33) 호주 퇴직연금협회(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ASFA)는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기업, 공공기관, 소매형 연금,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회원으로 있음

34) 법정 사용자부담금(Superannuation Guarantee; SG)이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임

35) 2023년 3월 기준 근로자 급여의 10.5% 수준임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호주 퇴직연금협회(ASFA)는 호주 정부·기업으로부터 유급 육아휴직을 지원받는 모든 대상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법정 사용자부담금(SG)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³⁶⁾

- 호주 정부는 근로자가 일정 소득과 근로조건 만족 시 사업장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에 더해 자율재량으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 호주 기업은 인재 유치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복지제도가 좋음³⁷⁾
- 다만,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호주 정부나 기업은 근로자가 유급 육아휴직 대상자에 속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법정 사용자부담금(SG)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
 - 이와 같은 상황에도 대다수 호주 기업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유급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법정 사용자부담금(SG)을 지급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지급액이 없었음
 - 호주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주 양육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여성의 퇴직연금계좌 잔액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고자 호주 퇴직연금협회(ASFA)는 호주 정부·기업이 유급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법정 사용자부담금(SG)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계좌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

○ 또한, 호주 퇴직연금협회는 소득·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입양아에 대해 해당 부모의 퇴직연금계좌에 5,000호주달러(약 440만 원)를 입금하는 정책인 Super Baby Bonus 안을 제시함

- 법정 사용자부담금(SG) 지원책은 근로자가 소득과 근로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무급 육아휴직 대상자일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호주에서는 연간 약 30만 명이 출생하지만 이에 반해 소득과 근로조건을 만족하여 호주 정부로부터 유급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여성은 17만 명에 그침
- 반면, Super Baby Bonus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조건에 제한이 없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퇴직연금계좌에 5,000호주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임
 - 5,000호주달러는 연 소득이 60,000호주달러(약 5,230만 원)인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지급받는 법정 사용자부담금(SG)과 유사한 수준임

○ 퇴직연금계좌 잔액이 늘면 개인은 이른 시기부터 은퇴를 위한 저축액을 복리로 누적·적립할 수 있고 특히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에게 이와 같은 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36) 호주 퇴직연금협회(2022. 10), “ASFA Pre-Budget Submission for the October 2022 Budget” 및 호주 퇴직연금협회 (2023. 2), “ASFA Pre-Budget Submission for the 2023-24 Budget”

37) 현재 호주 정부로부터 유급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약 50%가 호주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음

- 여성은 자녀 출산 시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또한 비례하여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시 저축액 규모에서 남성 대비 불리함
- 이에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에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다면 여성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30세에 출산한 여성의 퇴직연금계좌에 5,000호주달러가 입금되면 동 금액은 해당 여성이 67세에 도달할 때 11,000호주달러로 증액되는 효과가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므로 호주 재무부는 퇴직연금계좌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혜택 폭을 축소하는 방안, 즉 이들의 퇴직연금계좌에 적용되는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함³⁸⁾

- 호주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³⁹⁾ 중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금액(사용자·근로자의 부담금 및 발생 수익)에 대해 현재 15%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⁴⁰⁾
- 호주 재무부는 퇴직연금계좌 잔액이 300만 호주달러(약 26억 원) 이상인 고소득층에 한해 이들 계좌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라 발표함⁴¹⁾
 - 이와 같은 안은 호주 전체 인구의 약 0.5%(약 8만 명)에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인구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인구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연금계좌 세율이 부과됨
- 호주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의 혜택 폭을 축소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고령화 정책 등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호주 정부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계좌 세율 개편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제도 도입은 2025년 정도로 예상함

- 호주 정부의 퇴직연금계좌 세율 개편에 대해 일부는 300만 호주달러로 설정된 잔액 기준이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와 연동될 필요가 있으며, 퇴직연금계좌 수익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호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예정이며 연금 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예정임

38)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superannuation-tax-breaks>

39) 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고 퇴직연금계좌에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함

40) 호주에서 퇴직연금계좌는 법정으로 정해진 사용자부담금(SG) 외에도 근로자가 세전이나 세후 소득을 활용하여 추가 부담금을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를 과세하고 있음. 또한, 한도 초과로 납부되는 부담금은 한계소득세율(최대 45%)을 적용함. 개인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이 최고 45%에 달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41) 고소득층의 퇴직연금계좌 내에서도 300만 호주달러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15%)이 부과되고, 300만 호주달러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세율이 부과됨

II

북미

1. 미국 연방 보험청의 데이터 콜 제안

요 약

미국에서는 2021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기관 및 보험회사 또한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미국 연방 보험청은 해당 리스크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하기 위해 데이터 콜을 제안하였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임

- 2000년 이후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후 관련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산불 5건 중 4건이 2020년 및 2021년에 발생하였으며,¹⁾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10건 중 9건이 2004년 이후로 발생하였음²⁾
 - 2022년에는 2017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0억 달러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자연재해 건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1980년대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³⁾
 - Munich Re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총 2,800억 달러 정도였으며, 이 중 대략 60% 정도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음⁴⁾
- 2021년 4월 22일 재무부 장관 옐런의 트위터 발언⁵⁾ 및 2021년 5월 20일 대통령 바이든의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이하, '기후 리스크'라 함)에 관한 행정명령⁶⁾ 발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후리스크

1) III(2023. 2. 6), "Triple-I Moderating Feb. 9 Keynote Session at Wildfire Conference"

2) III(2021. 4. 22), "Climate Risk Is Not A New Priority for Insurers"

3) Fidelity(2023. 3. 7), "Yellen Warns Climate Change Could Trigger Asset Value Losses, Harming US Economy"

4) Bloomberg Law(2022. 10. 27), "Climate Change Financial Risk Prompts Treasury to Seek Remedies"

5) Twitter(2021. 4. 22), "Secretary Janet Yellen"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행정명령 이후로 금융안정 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는 기후 변화를 미국 금융안정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10월 기후리스크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⁶⁾
 - 해당 보고서는 미국 금융 규제 기관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후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30가지 이상의 권장 사항을 제공해주었음
 - 이는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 및 연방 금융 규제 기관이 행동할 수 있는 공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2023년 3월 7일에는 FSOC의 첫 외부 자문 위원회인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자문위원회(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dvisory Committee; CFRAC)가 개최됨

○ 또한, 관련기관 및 보험회사 역시 기후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각자의 위치에서 대응책을 마련함(〈표 1〉 참조)

〈표 1〉 관련기관 및 보험회사의 주요 대응책

분류	기관명·회사명	주요 대응책
관련기관	전미 보험위원회(NAIC)	주 보험 규제 기관, 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기후리스크 및 복원력 문제에 관한 토론 및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 및 복원력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축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II)	산불 완화 및 기후리스크 복원력에 중점을 두어, Capgemini와 함께 “Tamping Down Wildfire Threats: How Insurers Can Mitigate Risks and Losses”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The Geneva Association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 관한 테스크포스를 구축하고, “Anchoring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in Core Business Decisions in Insurance”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보험회사	Swiss Re	2025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35%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
	Zurich Insurance Group	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기후리스크를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복원력 서비스(Climate Change Resilience Services; CCRS)를 도입
	AON	매년 “Weather, Climate and Catastrophe Insight”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

자료: NAIC, “Climate and Resiliency (EX) Task Force”(https://content.naic.org/cmte_ex_climate_resiliency_tf.htm); III (2023. 2. 6), “Triple-I Moderating Feb. 9 Keynote Session at Wildfire Conference”; The Geneva Association (2023. 1. 11), “How Insurers Can Use New Approaches to Tackle Climate Change Risk”; III(2021. 4. 22), “Climate Risk Is Not A New Priority for Insurers”

6) The White House(2021. 5. 20), “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3. 3. 7),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at the First Meeting of the FSOC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dvisory Committee”

○ 한편, 2022년 10월 14일, 재무부 산하 기관인 미국 연방 보험청(Federal Insurance Office, 이하, 'FIO'라 함)은 기후변화 보고서 발간을 연기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한 평가를 주목적⁸⁾으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콜(Data call)을 제안함¹⁰⁾

- FIO는 데이터 콜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20일까지 총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함
- 보험사를 규제할 권한은 FIO가 아닌 주 정부에 달려있으나, FIO는 주 정부에게 규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음
 - 2010년 Dodd-Frank Act로부터 FIO는 어떠한 문제가 더 광범위한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산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¹¹⁾
- 대상이 되는 보험사는 연간 원수보험료가 1억 달러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임¹²⁾
 - 34개 주에서 총 200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해당됨¹³⁾

○ 데이터 콜이 시행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연간 보고에서 보고하는 계약 건수, 원수보험료, 손실 등의 데이터 외에도, 법정 제출 항목이 아닌 원수보험료 갱신, 대체비용, 공제액, 보장 한도 등의 데이터까지 우편 번호 수준의 데이터로 제출해야 함¹⁴⁾

- FIO는 대상이 되는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 4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고, 적게는 100시간에서 많게는 350시간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함¹⁵⁾
- FIO는 '기후 취약'으로 식별된 10개 주에서 주 보험시장의 최소 80%를 커버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¹⁶⁾
 - 식별된 10개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워싱턴, 캘리포니아, 테네시, 텍사스, 플로리다임

○ FIO의 데이터 콜 제안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며, 현재 FIO는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비영리 공익 법인·단체는 주로 조건부 찬성 또는 찬성하고 있음

8) 4가지 사항은 (1) 기후 관련 익스포저, (2) 기후 관련 익스포저가 보험 계약자의 보험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3) 기후변화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에서 민간 보험 보장의 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4) 보험 계약자의 보험 비용에 대한 관련 효과임

9) The National Law Review(2022. 12. 10), "Rocks and Hard Places: Noteworthy Developments in Climate Change Regulation for Us Insurers"

10) FIO(2022),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Proposed Data Collection: Request for Comment"

11) Bloomberg Law(2022. 10. 27), "Climate Change Financial Risk Prompts Treasury to Seek Remedies"

12) Bloomberg Law(2022. 10. 27), "Climate Change Financial Risk Prompts Treasury to Seek Remedies"

13) III(2022. 12. 21), "Insurers Lead Way on Climate Risk Resilience, Triple-I Tells U.S."

14) FIO(2022),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Proposed Data Collection: Request for Comment"

15) Bloomberg Law(2022. 10. 27), "Climate Change Financial Risk Prompts Treasury to Seek Remedies"

16) CarbonPlan(2022. 12. 20), "Which States' Insurance Markets Are Most Exposed to Climate Risks?"

- CarbonPlan¹⁷⁾은 FIO의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 노력은 주택소유자 관련 보험 정책의 경제성과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나, 효율성 측면에서 초기에 선택한 건물 손실과 기후변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후 취약’ 10개 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Public Citizen¹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보험 업계가 보험료 인상 및 보험 보장 범위 축소 등의 영업 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가장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FIO가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청함
- 반면, 관련 협회 및 연구소는 주로 반대하고 있음
 - 전미 보험감독자협의회(NAIC)¹⁹⁾는 기후리스크와 날씨 관련 익스포저가 보험 정책의 경제성과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FIO의 뜻을 이해하지만, 산업 또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식별하는 활동에 보험 규제 기관을 참여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주장함
 -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II)²⁰⁾는 FIO 목표는 III가 이미 보고한 정보 및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찾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²¹⁾는 FIO와 협력하여 보험시장의 기후리스크에 대한 모든 검토가 신중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나, 데이터 콜이 시행되면 FIO가 보다 더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음을 명쾌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함

17) CarbonPlan(2022. 12. 20), “Which States’ Insurance Markets Are Most Exposed to Climate Risks?”

18) Public Citizen(2022. 12. 20), “Groups Call on U.S. Treasury to Measure Climate Crisis’ Impact on Insurance”

19) III(2022. 12. 21), “Data Call Would Hinder Climate-Risk Efforts More Than It Would Help”

20) III(2022. 12. 21), “Data Call Would Hinder Climate-Risk Efforts More Than It Would Help”, “Insurers Lead Way on Climate Risk Resilience, Triple-I Tells U.S.”

21) APCIA(2022. 12. 20), “APCIA Comments on FIO’s Proposed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Data Collection”

2. 미국 보험회사의 ESG 경영 현황: 임금 형평성을 중심으로

요 약

미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는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퇴직연금 기여금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 직장 내 성별의 다양성은 공정성 관점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됨. 최근, 미국에서는 임금 투명성과 관련한 법률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 또한 임금 형평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Pew Research Center(이하, 'PRC'라 함)의 분석²²⁾²³⁾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18% 정도였으며,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보고²⁴⁾에 따르면 여성의 퇴직연금 기여금은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30% 정도 적었음
 - 2002년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20% 정도였으며, 2002년부터 2022년 사이 성별 임금 격차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 PR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된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고용주로부터의 차별대우였음
 - 전체 응답자의 50%, 남성 응답자의 37%, 여성 응답자의 61%가 주된 요인으로 응답함
 - 2019년 엘리트 경영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WJ)의 설문조사 결과²⁵⁾에 따르면 남성(59%)보다 여성(64%)이 더 많은 비율로 승진을 요구했지만, 거절되는 경우가 두 배 정도 많았음
 - National Institute on Retirement Security(이하, 'NIRS'라 함)의 보고서²⁶⁾에 따르면 은퇴 자산 격차의 주된 원인은 성별 임금 격차로 분석됨
 - 한편, 2021년 기준 미국에서 남성의 기대수명은 73.5세였으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79.3세였음²⁷⁾
 - 이는 여성의 은퇴자금 고갈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한편, 36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 M&C)의 분석²⁸⁾에 따르면 인종·성별의 다양성은 기업의 수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2,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2) 풀타임 근로자 및 파트타임 근로자를 모두 대상으로 함

23) PRC(2023. 3. 1), "Gender Pay Gap in U.S. Hasn't Changed Much in Two Decades"

24) GAO((2023. 3. 24), "The Gender Pay Gap and Its Effect on Women's Retirement Savings"

25) WJ(2021. 10. 14), "The Pay Gap for Women Starts With a Responsibility Gap"

26) NIRS(2020. 5), "Still Shortchanged: An Update on Women's Retirement Preparedness"

27)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2. 12),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2021"

28) M&C(2015. 1. 1), "Why diversity matters"

한 Credit Suisse의 분석²⁹⁾에 따르면 여성 이사의 존재가 기업의 수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음

- M&C의 분석 결과, 인종 다양성 항목에서 상위 25%에 속한 기업들은 중앙값에 위치한 기업보다 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35% 정도 높았으며, 성별 다양성 항목에서 상위 25%에 속한 기업들은 중앙값에 위치한 기업보다 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15% 정도 높았음
- 이와 관련하여, Harvard Business Review는 기업의 지적 잠재력을 높이는 데 다양한 성별, 인종, 국적의 이사진들과 함께 직원 풀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음³⁰⁾
- M&C와 미국 항공 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리더십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서 여성들이 책임을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직원 교육에서 또한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미국에서는 몇몇 주들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투명성과 관련한 법률이 도입되고 있음(〈표 2〉 참조)

〈표 2〉 미국 주별 임금 투명성과 관련한 법률

주	도입 연월	내용	비고
네바다	2021년 10월 1일	• 면접 후 구직자에게 봉급 또는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함 • 승진 또는 전근을 신청하거나 제안받은 직원에게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시급 결정 시 급여 이력을 요구할 수 없음	• 위반 건당 최대 \$5,000 벌금
뉴욕	2023년 9월	• 4인 이상을 보유한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채용, 승진 및 전근 시 연봉 또는 시간당 임금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공해야 함 • 급여 이력을 요구할 수 없음	• 보복 금지 조항 포함
로드아일랜드	2023년 1월 1일	• 지원자나 직원의 요청 시 현재 및 잠재적 역할에 해당하는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함	-
메릴랜드	2020년 10월 1일	•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에 따라 지원자의 요청 시 해당 직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제공해야 함 • 급여 이력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급여 이력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선별하거나 임금을 결정할 수 없음	• 보복 금지 조항 포함

29) Credit Suisse(2012. 8), "Gender Divers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30) Harvard Business Review(2016. 11. 4), "Why Diverse Teams Are Smarter"

〈표 2〉 계속

주	도입 연월	내용	비고
워싱턴	2023년 1월 1일	- 모든 채용공고에 봉급 또는 급여 범위, 보너스 및 스톡옵션을 포함한 기타 모든 혜택을 공개 및 설명해야 함 - 원격 근무자에게도 포함됨	- 위반 건당 \$500 벌금 - 반복 위반 시 최대 \$1,000 또는 손해액의 10% 중 더 큰 수치로 벌금
캘리포니아	2023년 1월 1일	- 캘리포니아에 직원이 1인 이상 있으며, 15인 이상을 보유한 고용주는 채용공고에서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함 - 원격 근무자에게도 포함됨 - 요청 시 직원의 급여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지원자의 급여 이력을 요구할 수 없음 - 직원이 100인 이상인 고용주는 매년 직원 및 계약자의 시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급여 범위 공개 위반 시 건당 최대 \$10,000 벌금 - 보고서 미제출 시 직원 1인당 최대 \$500 벌금
코네티컷	2021년 10월 1일	- 코네티컷에 직원이 1인 이상 있는 고용주는 채용공고 시 그리고 지원자 및 직원의 요청 시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함 - 원격 근무자에게도 포함됨	위반 시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 변호사 수임료 등을 배상해야 함
콜로라도	2021년 1월 1일	콜로라도에 직원이 1인 이상 있는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봉급 또는 급여 범위, 보너스 및 스톡옵션을 포함한 기타 모든 혜택을 공개 및 설명해야 함	위반 건당 최소 \$500에서 최대 \$10,000 벌금

주: 뉴욕주의 경우에는 2023년 9월 도입 예정임

자료: Poster Compliance Center(2023. 1. 23), "What States and Cities Have Wage Transparency Laws in 2023?"

○ 또한, 보험회사도 임금 형평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표 3〉 참조)

- 이는 ESG 경영 조건 충족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사업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여짐³¹⁾

〈표 3〉 보험회사의 임금 형평성 개선과 관련한 주요 노력

회사명	임금 형평성과 관련한 주요 노력
Allstate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직원의 약 57%가 여성이며, 직원의 약 42%가 인종 또는 민족적으로 다양함 - 투명하고 공정한 급여 관행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모든 직무의 직무 설명란에 급여 범위를 100% 공개함
AmericanAg™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성, 형평성과 관련한 토론 세션을 개최함
Argo Group	2017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를 추적하고 개선 작업을 실시함 2020년 영국 팀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함

31) III(2023. 3. 14), "Pay Equity in The Insurance Industry: It Makes Good Business Cents"

〈표 3〉 계속

회사명	임금 형평성과 관련한 주요 노력
Chubb	• 전 세계 경력의 모든 단계에 있는 여성을 위해 설계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함 • 임원과 재능있는 여성을 짝지어, 잠재적인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개발함
Church Mutual	• 2020년 APCIA가 주최한 컨퍼런스 ‘Women and Diversity: Expanding Opportunity in Insurance’에서 여성과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전국적인 리더로 인정받았음
CSAA Insurance Group	• 임금 형평성 분석을 실시함
Farmers Insurance	• Women Back to Work™과 협력하여 기술 분야 여성의 경력 재진입을 지원함 • 직원 수가 10,000명 이상인 회사 중 성별 점수 부분에서 상위 5%에 속함 • Forbes 선정 여성을 위한 최고의 고용주
Grange Insurance	• 성별 임금 평등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매년 성별 임금 평등 분석을 실시함 • 뛰어난 다양성 조직 부문에서 Columbus Business First’s Diversity in Business Award를 수상함
Kemper	• 동등한 급여와 포용적이고 공평한 근무 환경을 약속함
Lloyd	• 2021년 성별 및 인종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2017년 27.7%, 2020년 20.4%, 2021년 18.6%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MetLife	•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포함한 급여 관행을 매년 검토함
Munich Re	• 2025년 말까지 전 세계 그룹 전체의 모든 관리 직책에서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Westfield Insurance	• Women’s Network라는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직장 내 리더로서 여성의 강점과 기여도를 주제로 여성들을 교육하고 상호작용함
Zurich Insurance Group	• 직장 내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제3자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음

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함: Allstate Insurance Company, “Inclusive Diversity & Equity”; AmericanAg™ (2021. 7),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2022 Report”; Argo Group(2021. 3.), “UK Gender Pay Gap Report 2020”; Chubb,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women leaders”; Church Mutual, “Diversity and Inclusion: Woven into the fabric of our culture”; CSAA Insurance Group, “Pay Equity Analysis” (<https://www.ceoaction.com/actions/pay-equity-analysis/>); Women Back to Work™, “Farmers Insurance Returnship”; Grange Insurance(2022. 4. 5), “Grange Insurance named Diversity in Business Award winner”; Kemper,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 2022”; Lloyd, “Gender and Ethnicity Pay Gap Reports 2021”; MetLife, “Commitment to Pay Equity”; Munich Re, “Diversity and Inclusion”; Westfield Insurance, “Diversity and Inclusion”; Zurich Insurance Group, “Equity”

III

유럽

1. EU 차량데이터 접근권한에 대한 법(EU Data Act) 동향

요 약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혁신으로 인해 차량데이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에 2022년 EU 집행위원회는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조사를 넘어 정비업자, 보험회사 등 후속시장 참여자에게 확대하기 위해 EU 데이터 법 초안을 발표함. 이후 데이터 법 채택이 계획보다 미루어져 보험업계 등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했으나 유럽의회는 데이터 법을 최종 통과시킴

○ 커넥티드 카,¹⁾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혁신으로 인해 차량데이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커넥티드 카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는 텔레메틱스 보험 개발, 차량 유지 및 보수, 차량 내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²⁾
 - 차량데이터 연결 유형은 차량 대 네트워크(V2N), 차량 대 인프라(V2I), 차량 대 차량(V2V), 차량 대 클라우드(V2C), 차량 대 보행자(V2P), 차량 대 장치(V2D)로 매우 광범위함³⁾
- 글로벌 커넥티드 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3,734억 달러, 차량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약 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신차의 85%를 커넥티드 카가 차지하였으며 2025년까지 커넥티드 카의 수는 유럽, 미국, 중국에서 4억 7천만 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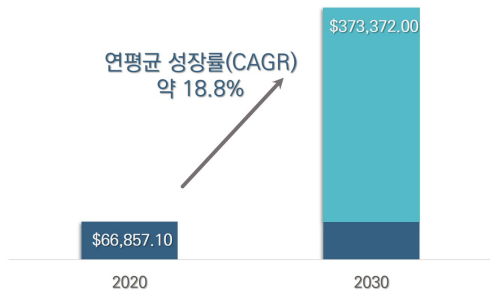
1)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란 '통신망에 연결된 자동차'를 뜻하는 말로 다른 차량이나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보행자 단말기 등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돕고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2) Deloitte(2019), "Monetizing data in the age of connected vehicles"

3) OTONOMO(2021), "V2X: Connected Vehicles Can Improve Traffic Management, Vehicle Safety, and So Much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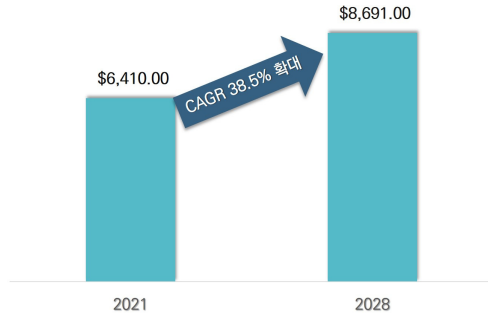
4) ITSdigest(2018), "470 Million Connected Vehicles On the Road by 2025"

〈그림 1〉 글로벌 커넥티드 카 시장 규모



자료: Research and markets(2021), "Global Connected Cars Market 2020-2030"

〈그림 2〉 글로벌 차량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



자료: Emergen Research(2021), "Automotive Data Monetization Market"

- 2022년 EU 집행위원회는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량 제조사를 넘어 정비업자, 보험회사 등 후속시장(Aftermarket) 참여자에게 확대하기 위해 EU 데이터 법(EU Data Act) 초안을 발표함⁵⁾
 -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단일시장 강화를 목표로 2020년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을 채택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을 추진하였음
 - 유럽 데이터 전략은 역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데이터 공유의 활성화와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추구함
 - 데이터 거버넌스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 개인 및 공공부문이 기존 생산 및 수집 목적이 아닌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구조를 마련함
 -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EU 데이터 법은 데이터 거버넌스 법을 보완하는 법으로 데이터의 접근 및 사용을 규제하여 누가 어떤 조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구체화함
 - EU 데이터 법에 따라 데이터 소유자(차량제조사 등 IoT 제품 제조기업)는 데이터의 주체인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사용자(보험회사, 정비소 등)에게 무료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함
 - 소비자는 IoT 제품을 렌트한 경우에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데이터 소유자는 사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을 배제한 투명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함
 - 다만 데이터 사용자가 공유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해당 법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이 주 기능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EU 데이터 법은 규정(Regulation)으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연합차원의 법적 구속력을 지님

5) European Commission(2022), "Data Act: Commission proposes measures for a fair and innovative data economy"

○ 한편 데이터 법 채택이 계획보다 미루어져 보험업계, 정비업계 등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하였으나 2023년 3월 14일 유럽의회는 데이터 법을 통과시킴⁶⁾⁷⁾

- 독일보험협회(GDV), 유럽보험협회(Insurance Europe),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CLEPA), 유럽자동차딜러협회(CECRA) 등 애프터마켓 시장 참여자는 데이터 법 채택이 미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신속한 채택을 요구하는 서한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보냄
 - 특히, 2024년 유럽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데이터 법이 입법 우선과제에서 경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 2023년 3월 14일 EU 데이터법은 찬성 500표, 반대 23표, 기권 110표로 채택되었으며, 의회는 이사회와 최종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6) GDV(2023), "EU-Kommission verzögert Gesetzgebung für freien Zugang zu Fahrzeugdaten"

7) Europea Parliament(2023), "Data Act: MEPs back new rules for fair access to and use of industrial data"

2.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의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 출시 및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지침 발표

요 약

독일에서 생사혼합보험은 보험료 구성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 협회의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낮은 수익성으로 시장 내 매력도를 잃고 있음. 이에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생사혼합보험 상품 출시 및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서를 발행했으며, 보험산업 내 이해관계자들도 관련 의견을 개진함. 또한, 연방금융감독청은 모집수수료와 사업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5개 생명보험회사를 조사하겠다고 밝힘

- 생사혼합보험(Kapitallebensversicherung)은 보험료 구성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 협회의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최고예정이율 인하에 기인한 낮은 수익성으로 시장 내 매력도를 잃고 있음
 - 독일 보험시장 내에서 생사혼합보험의 점유율은 2020년 기준 19.77%로, 개인연금보험(30.57%)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동 상품의 신규 계약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⁸⁾
 - 생사혼합보험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특성이 혼합된 생명보험 상품으로, 만기 이전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생존 시 만기보험금과 저축보험료에서 부리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임
 - 독일 보험소비자협회(Bund der Versicherten; BdV)는 2018년 IDD⁹⁾ 이행법(Umsetzungsgesetz zur IDD)으로 인해 설계사가 소비자의 요청하에 모집 수수료를 공개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적함¹⁰⁾
 - 이와 더불어 BdV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생사혼합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모집 관리비용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설계사의 수수료는 명시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함
 - 상품마다 상이하지만 생사혼합보험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사업비)는 총 보험료의 25%에서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¹¹⁾
 - 이와 더불어 2000년까지 최고 4%를 기록했던 최고예정이율(Höchstrechnungszins)¹²⁾은 2022년 0.9%에서 0.25%로 조정돼 생사혼합보험의 수익성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저축보험료에만 최고예정이율이 적용되어 소비자가 동 상품 가입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임

8) Versicherungsbote(2021), "Lebensversicherung in Zah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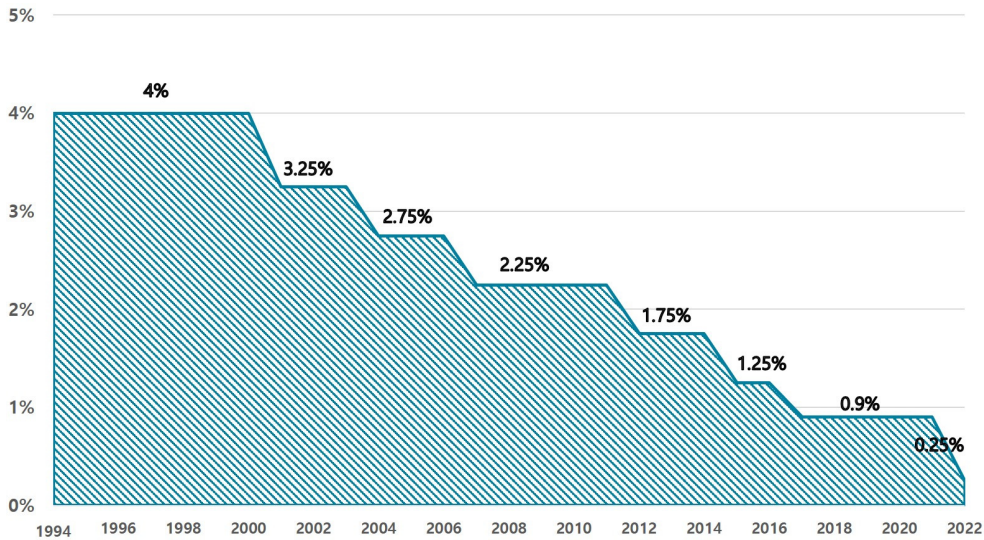
9) IDD는 유럽 보험상품판매지침(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을 의미하며, 2018년 10월 EU 전역에 시행되었지만 독일의 경우 동 지침에 대한 이행법을 제정하여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음

10) Bund der Versicherten(2022), "Kapitallebensversicherung"

11) QUO VADIS der AltersvorSORGE(2021), "EINE BRISANTE LEKTÜRE DURCH DEUTSCHE MAGAZINE, ZEITSCHRIFTEN UND BÜCHER VON 1995 BIS HEUTE"

12) 최고예정이율(Höchstrechnungszins)은 연방재무부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생명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평가에 사용하도록 제시하는 이율로,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최저보증이율은 이를 상회할 수 없음

〈그림 3〉 독일 최고예정이율(최저보증이율) 변화 추이



자료: 독일계리사협회(Die Deutsche Aktuarvereinigung e.V., DAV), "Höchstrechnungsziins"

○ 이에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BaFin의 감독하에 있으며 IDD의 적용을 받는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생사혼합보험 상품 출시 및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서를 발행함¹³⁾

- BaFin은 해당 지침서를 통해 생사혼합보험 상품의 수익성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와 상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최소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2%)을 상회해야 함을 지적함
- 또한, 소비자가 초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초기에 높게 산정된 사업비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보험료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169조 3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초기 해약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계약 체결 이후 최소 5년간 보험료에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를 분산시켜야 함
 - BaFin은 초년도 수수료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가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을 5년 이후 해지할 경우 계약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해당 상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기간 동안 해당 비용(사업비, 모집수수료)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자산연계형 보험상품(Unit-linked)의 신계약 체결 시 펀드 회사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함

13) BaFin(2022), "Konsultation 08/2022: Merkblatt .../2022 (VA) - „Merkblatt zu wohlverhaltensaufsichtlichen Aspekten bei kapitalbildenden Lebensversicherungsprodukten“"

- BaFin의 조사 결과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신계약 중 약 30%(수입보험료 약 690억 유로)가 펀드 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취가 의심되며 이는 연간 펀드 자산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BaFin은 동 지침서에 대한 보험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동 감독지침서에 대해 독일 보험협회(GDV), 보험소비자협회(BdV), 계리사협회(DAV) 등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

- 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생사혼합보험의 수익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수익률의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밝힘¹⁴⁾
 - 이와 더불어 장기납입이 특징인 생사혼합보험을 조기 계약 해지에 대비하여 상품을 최적화하여야 한다는 방안은 상품 설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보험소비자협회는 동 지침이 IDD의 요구사항을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추어 세부화하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임¹⁵⁾
 - 다만, BaFin이 제시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2%를 상회하는 수익률 보증을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7~10%)을 고려할 때,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함
- 계리사협회는 보험상품의 수익성만이 소비자의 편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동 상품은 자산 리스크와 변동성을 줄이는 데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함¹⁶⁾
 - 기대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노후 구매력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산 운용 리스크 상승으로 노후 위험회피 성향의 소비자에게는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이와 더불어 BaFin은 모집수수료와 사업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5개 생명보험회사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¹⁷⁾

- 조사 대상 보험회사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해당 기업은 주요 판매 상품의 모집수수료 및 사업비가 업계 내 상위 25%에 속함

14) GDV(2023), "Stellungnahme zum Merkblatt Wohlverhaltensaufsicht zu kapitalbildenden Lebensversicherungsprodukten"

15) BdV(2023), "Stellungnahme zum Entwurf zum „Merkblatt zu wohlverhaltensaufsichtlichen Aspekten bei kapitalbildenden Lebensversicherungsprodukten“"

16) DAV(2023), "DAV-Stellungnahme BaFin-Merkblatt wohlverhaltensaufsichtlichen Aspekten bei kapitalbildenden Lebensversicherungsprodukten"

17) WirtschaftsWoche(2023), "Bafin nimmt Kosten von Lebensversicherungen ins Visier"

3. 영국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도입¹⁸⁾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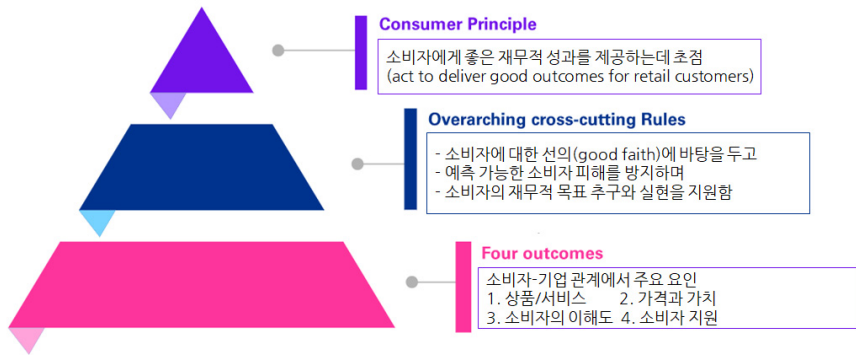
영국은 2023년 7월부터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도입할 예정임. 동 의무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금융산업의 문화 및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보험산업도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원활하게 준비 및 도입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 각 보험회사 CEO 레터(Letter)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 2021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제안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A new Consumer Duty)는 더 높은 소비자 보호 기준과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형성 및 행동의 근본적 변화를 골자로 함
 - 영국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 도입 배경은 ① 복잡·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중대하고 어려운 재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② 소비자들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산업 환경 변화 필요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FCA는 2022년 2월까지 관계자 협의 과정을 거쳐 2022년 7월 소비자 보호 의무 시행을 위한 정책 결정문(Policy statement), 최종규칙(Rules)과 제시안(Guidance)을 발표하였음
 - 해당 의무는 2023년 7월부터 기존 또는 신규 판매 상품·서비스에 적용되며, 잔존계약에 대해서는 2024년 7월부터 적용됨
 - 영국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 도입논의는 2025년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개혁을 통해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이 상당한 변화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의 최종 목표(Consumer Principle)는 소비자 이익을 최선으로 놓고 소비자가 좋은 재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FCA는 최종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3가지의 공통규칙(Cross-cutting rules)과 4가지 기대결과(Four outcomes)를 제시함
 -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는 개인금융을 제공하는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기관뿐 아니라 소비자의 재무 성과에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됨
 - 예를 들어, 보험산업의 경우 소비자와 직접적 계약을 맺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매개자인 대리점 등도 해당 소비자 보호 의무 실행 대상에 포함됨
 - 3가지의 공통규칙(Cross-cutting rules)에 따라 기업은 1) 소비자에 대한 선의를 바탕으로 두고, 2) 예측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3) 소비자가 재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18) FCA(2022. 7), "A new Consumer Duty Policy Statement PS22/9"

- 4가지 기대결과(Four outcomes)는 기업-소비자 관계에서 기대되는 구체적 결과들로 1) 상품·서비스, 2) 가격·가치, 3) 소비자의 이해도, 4) 소비자 지원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업들은 각 부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당국에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림 4〉 영국 Consumer Duty 프레임워크



자료: <https://kpmg.com/xx/en/home/insights/2022/03/consumer-duty.html>

〈표 1〉 Consumer Duty 4가지 기대결과

번호	부문	내용
1	상품·서비스	상품·서비스는 타겟 마켓의 특성, 목표, 니즈에 맞게 설계하여, 소비자 유익을 최선으로 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	가격·가치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소비자가 받는 가치(편익)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치가 제공되어야 함. 즉, 가격이 상승한다면 소비자가 받는 가치도 그만큼 증가해야 함
3	소비자 이해도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함
4	소비자 지원	상품·서비스 사용 전 단계(구매 전~후)에서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사용을 지원해야 함 (예: 상품 문의, 사업자 변경 등)

자료: FCA(2022. 7), "A new Consumer Duty Policy Statement PS22/9"

○ 보험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에서는 보호 대상 및 기업 대응 측면에서 기대결과의 범위가 확대됨¹⁹⁾

-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 중 1) 상품·서비스 및 2) 가격·가치 부문은 기존 상품 관련 거버넌스인 PROD4(Product Intervention and Product Governance Sourcebook)에 포함된 내용과 대부분 유사

19) FCA(2022. 7), "Finalized guidance: FG22/5 Final non-Handbook Guidance for firms on the Consumer Duty";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는 보험 분야는 일반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 순수 보장성보험(Pure Protection), 연금(Pensions), 장기 저축성보험(Long-term Savings), 퇴직연금(Retirement Income)이며, 거대위험이 이전되는 재보험 및 단체 보험, 영국 국경 외 거래는 제외됨

하나 3) 소비자 이해도 및 4) 소비자 지원은 이번 새로운 소비자 의무에 새롭게 추가된 부문임

- 1) 상품·서비스 및 2) 가격·가치 부문에서도 보호 대상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는데, 순수 보장성 이외에 보험 기반 투자 상품, 연금 소비자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특히 FCA는 취약고객(Vulnerable customers)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보험회사가 현재 보험 환경에서 취약고객을 정의하고 지원해줄 것을 강조함
- 또한, 기존 규제와 달리 기업이 소비자의 재무적 성과를 정의 및 모니터링하고, 효과를 입증해야 함
 - 기업이 정의한 재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소비자가 좋지 못한 재무적 성과를 경험하고 있다면 기업은 상황 개선을 위해 적절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취해야 함

○ FCA는 2023년 2월 보험회사 CEO 레터(Letter)를 통해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도입을 위해 현재 단계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산업이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함²⁰⁾

- FCA는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가격 차별의 근거를 다양하고 적절한 방식을 통해 제시할 것을 강조했으며,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소비자 이해도와 소비자 지원 강화를 주문함
 -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에서는 프라이싱 그룹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산출되더라도 모든 소비자가 공정한 가치를 얻고 있고, 보험료를 더 지불한 만큼의 담보·서비스의 추가적 편익이 있다는 근거가 있을 때만 가격 차별이 인정됨²¹⁾
 - 손해보험 청구 시 모든 자료의 복사본 제출 등 청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쉽게 청구하지 못하는 현상은 새로운 소비자 의무 중 소비자 지원 원칙에 어긋남
- FCA는 생명보험의 내재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상품 복잡성으로 인해 생명보험 산업에서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 도입에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연금 관련 소비자를 취약고객(Vulnerable customers)로 간주하여 이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 생명보험 상품의 긴 보장 기간 및 다양한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²²⁾
 - 연금 적립 단계에서 인출 단계로의 전환 및 연금 수령 개시는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 있는 소비자들을 취약 고객으로 고려하여 더 높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²³⁾

20) FCA(2023. 2), "Implementing the Consumer Duty in the General Insurance and Pure Protection sectors"; FCA(2023. 2), "Implementing the Consumer Duty in Life Insurance"

21) 예를 들면 손해보험에서 흔히 보이는 갱신가입자들에게 대한 갱신보험료 상승 관행(Price walking)은 공정하지 않은 가격 차별로 새로운 소비자 의무가 제안하고 있는 2) 가격·가치의 '공정한 가치' 원칙에서 벗어남

22) 예를 들면 보험상품의 여러 담보와 면책 사유 중 판매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상품설명서 앞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고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책 사유 등은 약관 전체를 읽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보험 보장의 전체 범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 이해 원칙에 위배됨

23) 예를 들면 소비자의 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넛지(Nudge) 방식 및 재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정책 결정문과 FCA가 각 보험회사에 보내는 레터(Letter)를 통해 타 금융산업과 달리 보험산업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를 도출할 수 있음

-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품 설계, 프라이싱, 보험금 청구 과정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성을 가지므로, 보험 소비자가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투명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상품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 보험산업만의 중요한 특징인 보험금 청구 단계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보험 소비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함
- FCA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의무에서 취약고객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공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산업이 취약 소비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적절하게 제공할 것을 기대함
- 보험산업에서는 소비자들이 적절한 상품과 서비스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개인(Intermediary)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관련 중개인 및 중개기관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음

4. 영국 보험회사들의 홍수위험 적응 수단(PFR 장치) 설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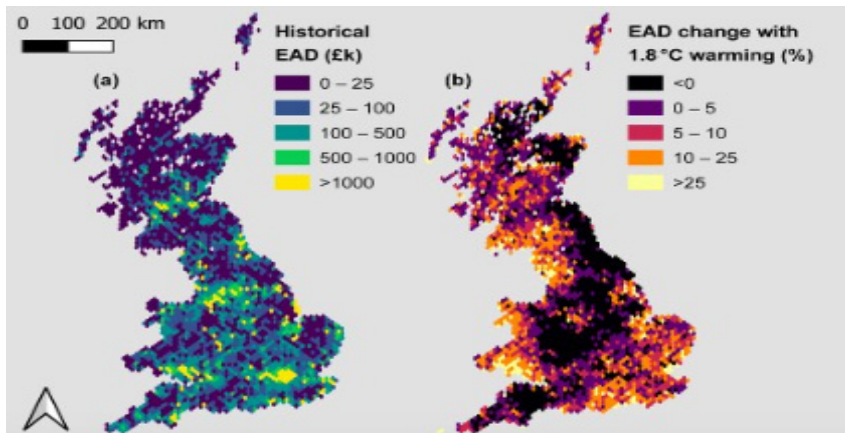
요 약

영국에서는 향후 증대될 홍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lood Re를 중심으로 위험 예방에 초점을 둔 ‘Build Back Better’ 플랜을 운영함. 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홍수 고위험 가구가 홍수 회복탄력성 개선을 위한 장치(Property Flood Resilience; PFR)를 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 보험회사의 홍수위험 적응 수단(PFR 장치) 설치 지원은 미래 보험가입자의 손실을 줄이고 보험회사 손해율을 개선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영국에서 홍수위험과 그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²⁴⁾

- 현재 잉글랜드 내 약 530만 가구(인구의 약 10%, 6가구 중 1가구)가 홍수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수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약 7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80년까지 영국 전반의 지역에서 홍수위험이 약 20~35%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평균 비용 또한 13~2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2020년 기준 홍수위험에 따른 손실액과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 홍수위험 증가율



자료: Paul D. Bates, James Savage, Oliver Wing, Niall Quinn, Christopher Sampson, Jeffrey Neal, and Andrew Smith(2023. 3), “A climate-conditioned catastrophe risk model for UK flooding”

○ 이에 영국에서는 미래 홍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lood Re를 중심으로 홍수위험 ‘예방’에 초점을 둔 ‘Build Back Better’이라는 플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²⁵⁾

24) Paul D. Bates, James Savage, Oliver Wing, Niall Quinn, Christopher Sampson, Jeffrey Neal, and Andrew Smith(2023. 3), “A climate-conditioned catastrophe risk model for UK flooding”

25) Flood Re(2022. 4), “Flood Re launches world first ‘Build Back Better’ scheme to help householders after a flood”

- Flood Re는 영국 정부와 영국 내 보험회사 협의체로 홍수 보험의 활용 가능성(Availability) 및 가격 적정성(Affordability)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일종의 홍수위험에 대한 재보험 풀이며, 203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기구임²⁶⁾
 - Flood Re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가게로부터 인수한 홍수위험을 스스로 보유하거나 Flood Re에 이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최근 영국에서는 Flood Re가 홍수위험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예방’에 초점을 둔 ‘Build Back Better’ 플랜을 202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Build Back Better 플랜은 이미 홍수로 손실을 경험한 홍수 고위험 가구가 미래 홍수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Property Flood Resilience; PFR)²⁷⁾들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최대 10,000파운드 한도에서 실비로 제공함
 - 홍수위험이 큰 지역에서 향후 홍수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수 고위험 지역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잠재적인 손실 완화에 도움이 됨
- 현재 Build Back Better 플랜에 영국 가게 보험 제공사들의 2/3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홍수 회복탄력성 개선 움직임과 함께 해당 플랜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플랜에 참여함
- 2022년까지 Build Back Better 플랜에 Aviva, Lloyds Banking group, NFU Mutual, Hiscox, LV= General insurance가 참여를 완료했으며, 2023년 1월 AXA UK가 합류하면서 영국 가게 보험 시장의 64% 점유율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정부는 홍수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 마련(Flood and coastal defense programme)을 위해 52억 파운드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로드맵(PFR Roadmap)을 통해 홍수위험 회복탄력성 개선 및 초기 PFR 시장 지원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역할을 구체화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약 34만 개의 물적 손실을 예방하고 국가적으로 홍수위험이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현재 Build back better 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해당 플랜이 향후 홍수가 초래할 손실 및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보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냄
- 2022년 11월 EIOPA는 기후위험에 대한 건전성 규제 논의 보고서를 통해 홍수위험 적응 수단(PFR 장치)의 설치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사례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함²⁸⁾

26) 임준·김석영(2019. 2), 「사이버보험 풀 관련 논의」, 『KIRI report』

27) PFR(Property Flood Resilience) 장치에는 침수 방지문, 집안 전기 소켓 높이 조정 등이 포함됨

28) EIOPA(2022. 11), “PRUDENTIAL TREATMENT OF SUSTAINABILITY RISKS: Discussion paper”

- 현재 영국은 EIOPA의 감독규제를 따르지 않지만, EU가 기후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EIOPA의 기후변화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영국 Build Back Better 플랜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음
- EIOPA는 Build Back Better 플랜에서 제공하는 PFR 장치를 ‘적응 수단(Adaptation measures)’²⁹⁾이라고 명명하고, 적응 수단은 기후위험 관련 보험의 활용 가능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변화가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경감시키는 사전적 수단이라고 정의함
- EIOPA는 영국 사례를 포함하여 적응 수단(PFR 장치) 활용 효과를 분석한 몇 가지 사례 연구(Case study)를 보고서에 제시하였는데, 모든 사례에서 적응 수단의 활용이 홍수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손실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함(〈표 1〉 참조)
- EIOPA는 기후변화 적응 수단(PFR 장치)의 활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모두 축소함으로써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보험료 위험(청구보험금이 수입보험료를 상회하여 보험회사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청구 보험금의 변동성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밝힘

〈표 2〉 홍수위험 대비 적응 수단(PFR 장치) 활용 사례 연구: 영국

구분	내용
배경	• 영국의 JBA(대재해위험관리회사)는 홍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장치(PFR)의 활용이 홍수 발생 시 거주용 건물의 손실을 얼마만큼 완화하는지에 대한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가정	•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 4.5(온실가스 저감 정책 실행)와 RCP 8.5(현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를 사용함 • 기간은 2050년으로 가정함
분석 결과	• PFR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8.4억 파운드,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9.1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PFR을 설치할 경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4억 파운드의 초기 투자를 통해 연평균 3.7억 파운드의 손실 완화를,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약 32억 파운드의 초기 투자를 통해 4.5억 파운드의 손실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 RCP 8.5 시나리오 기준 PFR에 대한 투자 회수 기간(이자율과 홍수위험, 재건축 비용 등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은 약 7.1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EIOPA(2022. 11), “PRUDENTIAL TREATMENT OF SUSTAINABILITY RISKS: Discussion paper”

- 종합하면, 영국의 Build Back Better 플랜에서 기대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홍수위험 적응 수단(PFR 장치) 설치 지원은 미래 홍수 사고 시 보험가입자의 손실을 줄이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개선함으로써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29) EIOPA는 적응 수단의 예로 홍수위험 대비 건물 개선(예: 방수 외벽, 역류 방지용 밸브 사용 등), 화재위험에 대비한 내화성 건축재 사용, 가뭄 위험에 대비한 관개 시설 설치, 심각한 날씨로 인한 상품 훼손 등에 대비한 예측 및 경고 시스템 적용 등을 제시함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12호 [2023-1]

발 행 일 2023년 4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 의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02-3775-9037)
인 쇄 소 경성문화사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

